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2025. 2.

석천초등학교

목차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Ⅰ. 학교안전계획 개요 ——— 1

1. 학교현황 ····· 1
2. 학교 안전 조직 ····· 5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9

Ⅱ. 학교안전 현황 ——— 10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 10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14

Ⅲ.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 19

1. 안전한 학교 특색사업 ····· 19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 24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 30

Ⅳ.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 34

1.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 34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 35
3. 학교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 36

참고 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38
참고 2. 안전사고관리지침 해설서 ····· 41
참고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71

PART I

학교안전계획 개요

1 학교현황

일반 현황

학교명	석천초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우편번호 : 1450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9				
전 화	070-7099-9670	FAX	032-328-7038	홈페이지	http://sukchun.es.kr
교 장	박○○	학교안전책임관	교감 이○○	행정실장	김○○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학교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	유치원	특수학급	돌봄교실
	학급수	6	5	6	7	7	6	37	3	2	3
	평균학생	23.3	26	24.1	23.1	22.28	25.8	24	13	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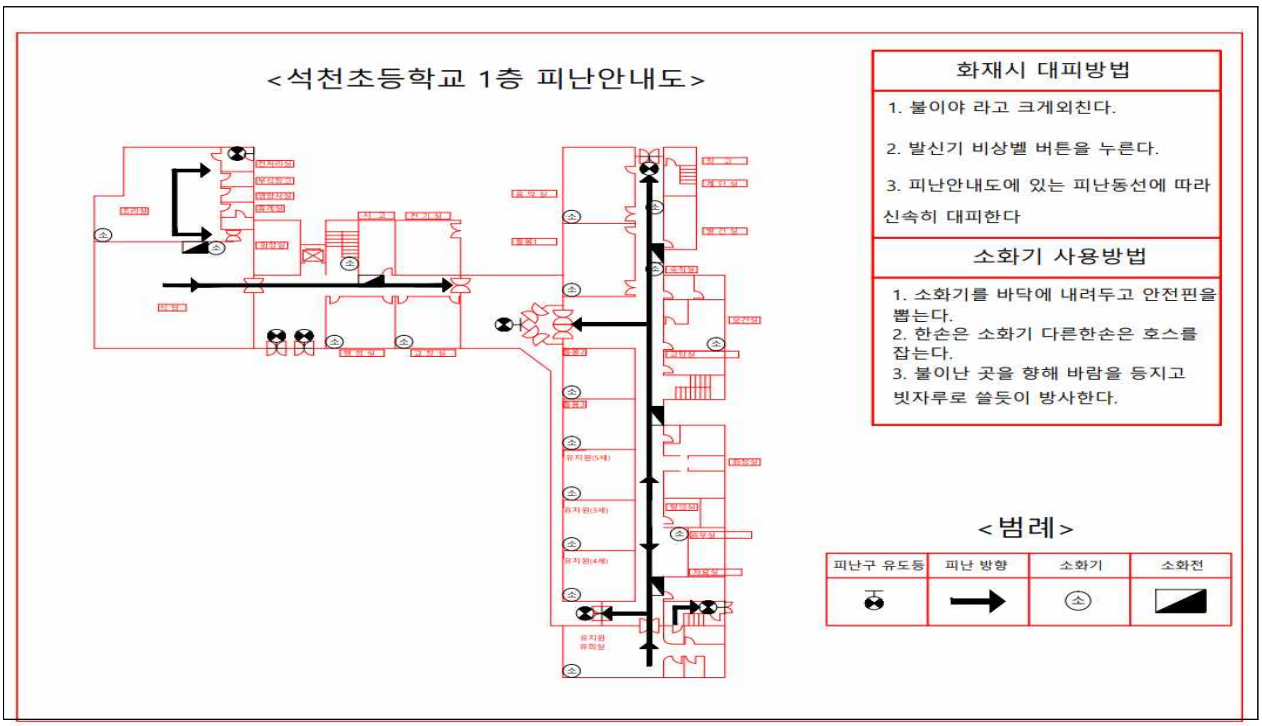
교직원 현황	교장		교감		교 사		행정직		교육공무직원		총계	
	여	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		5	46	2	2	1	21	9	70

비상대피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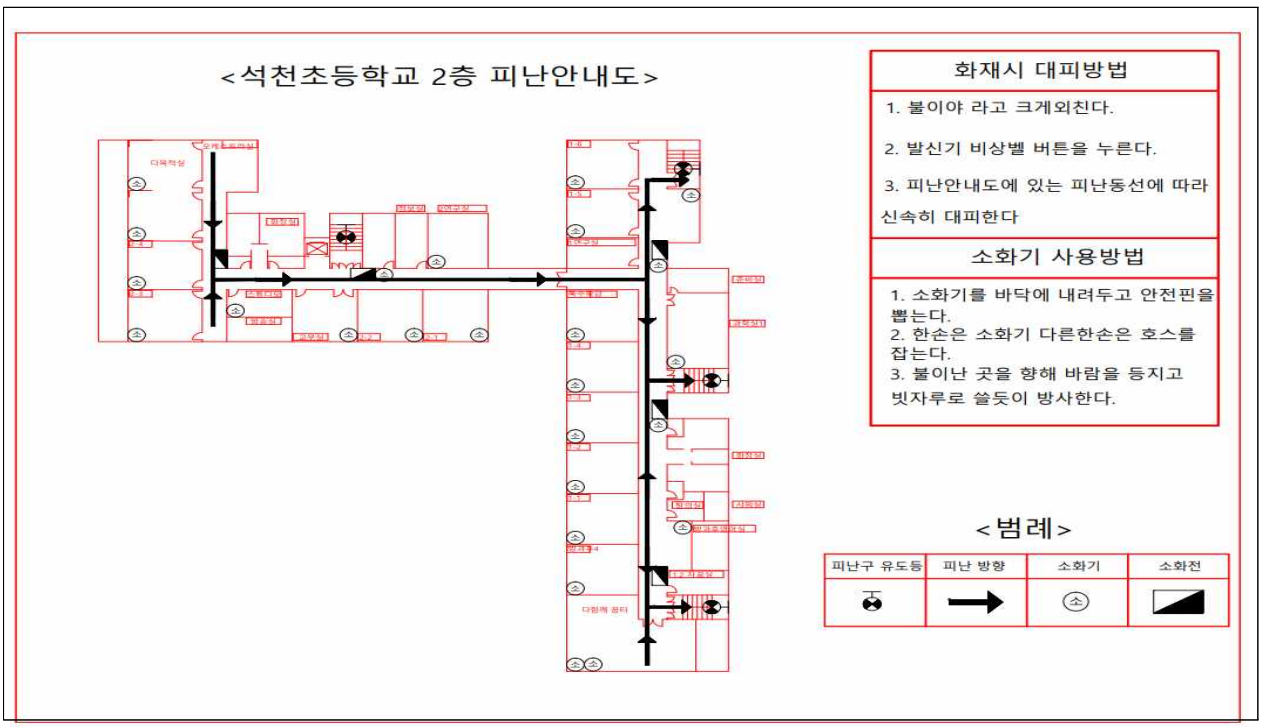


범례	학교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9
차량 접근 가능 경로 (정문) 도보 및 소형이동 통로 - 차량불가 (후문) 학교 구역	- 행정실 1층 - 교무실 2층 - 엘리베이터 행정실 맞은 편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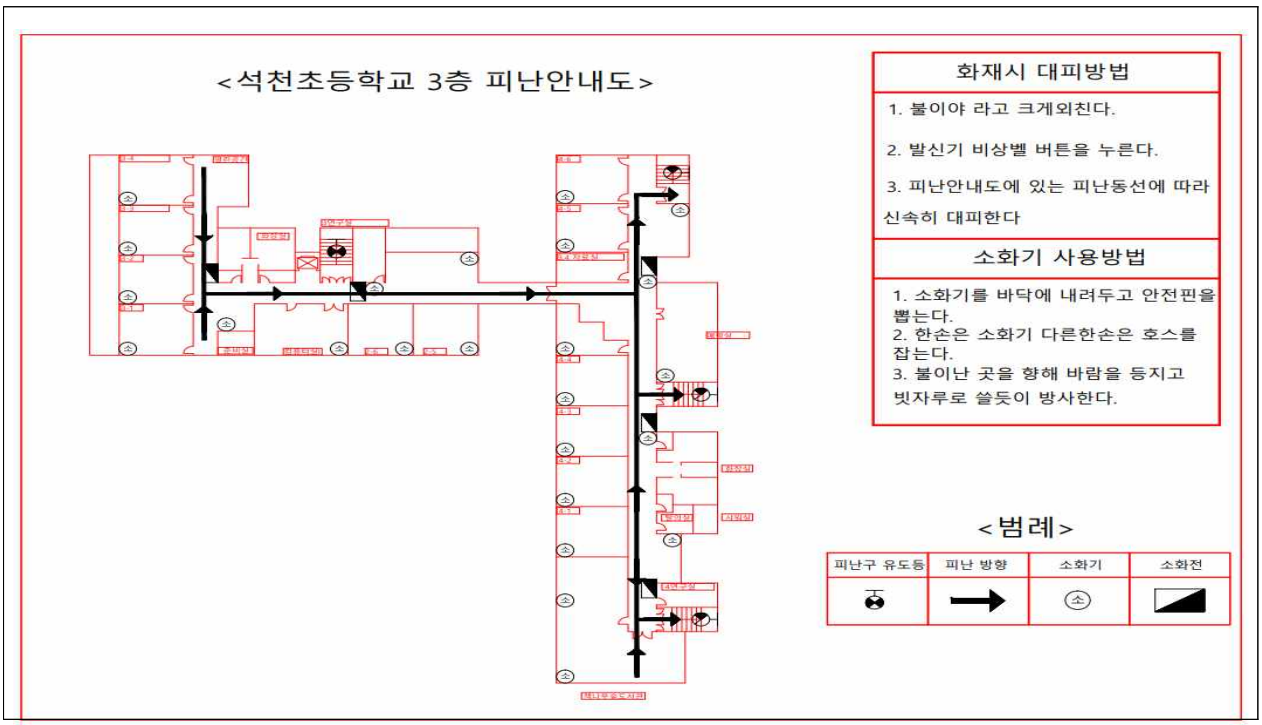
○ 비상대피 안내도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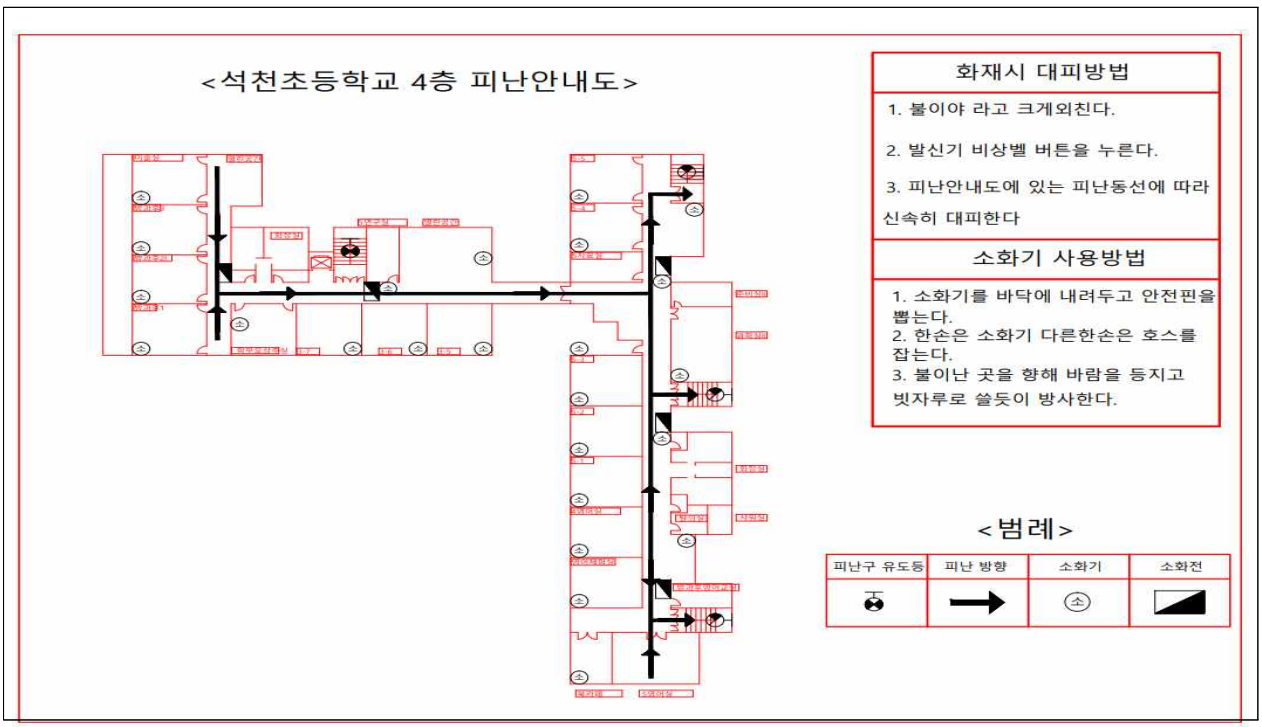
○ 비상대피 안내도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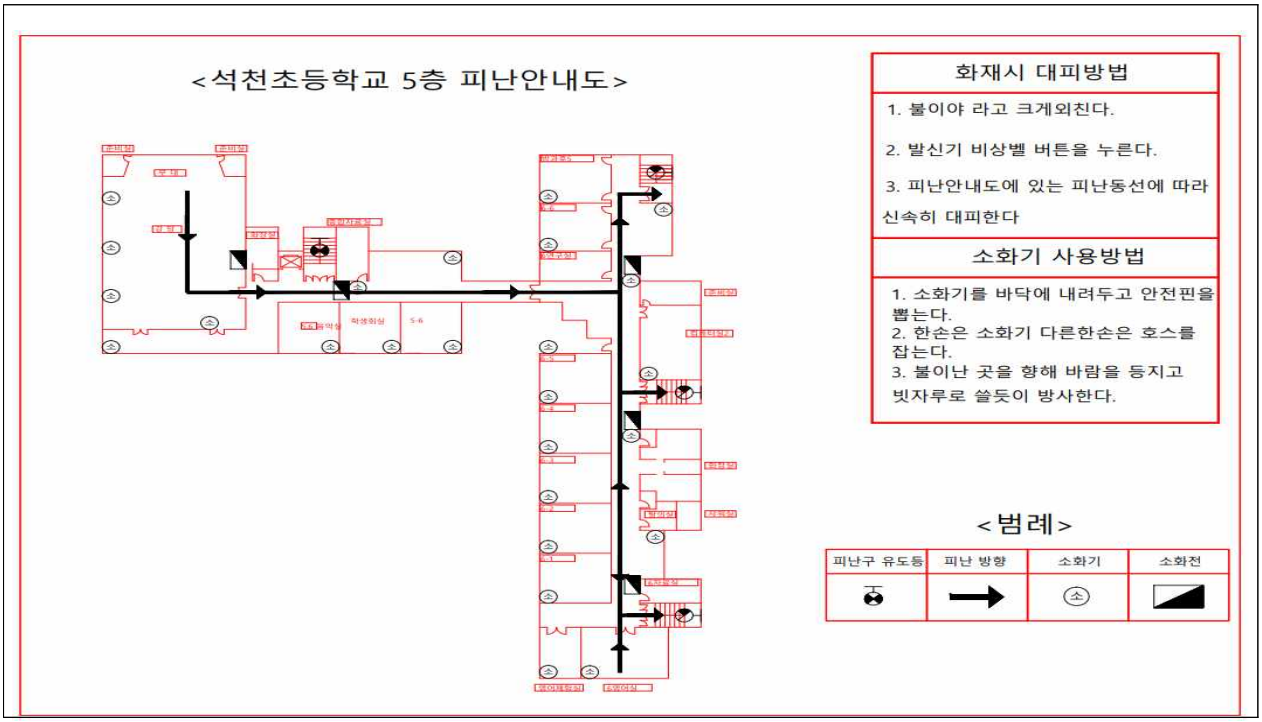
○ 비상대피 안내도 (3층)



○ 비상대피 안내도 (4층)



○ 비상대피 안내도 (5층)


<석천초등학교 5층 피난안내도>
화재시 대피방법
1. 불이야 라고 크게외친다.
2. 발신기 비상벨 버튼을 누른다.
3. 피난안내도에 있는 피난동선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소화기 사용방법
1.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두고 안전핀을 뽑는다.
2. 한손은 소화기 다른한손은 호스를 잡는다.
3. 불이난 곳을 향해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한다.
<범례>
피난구 유도등
피난 방향
소화기
소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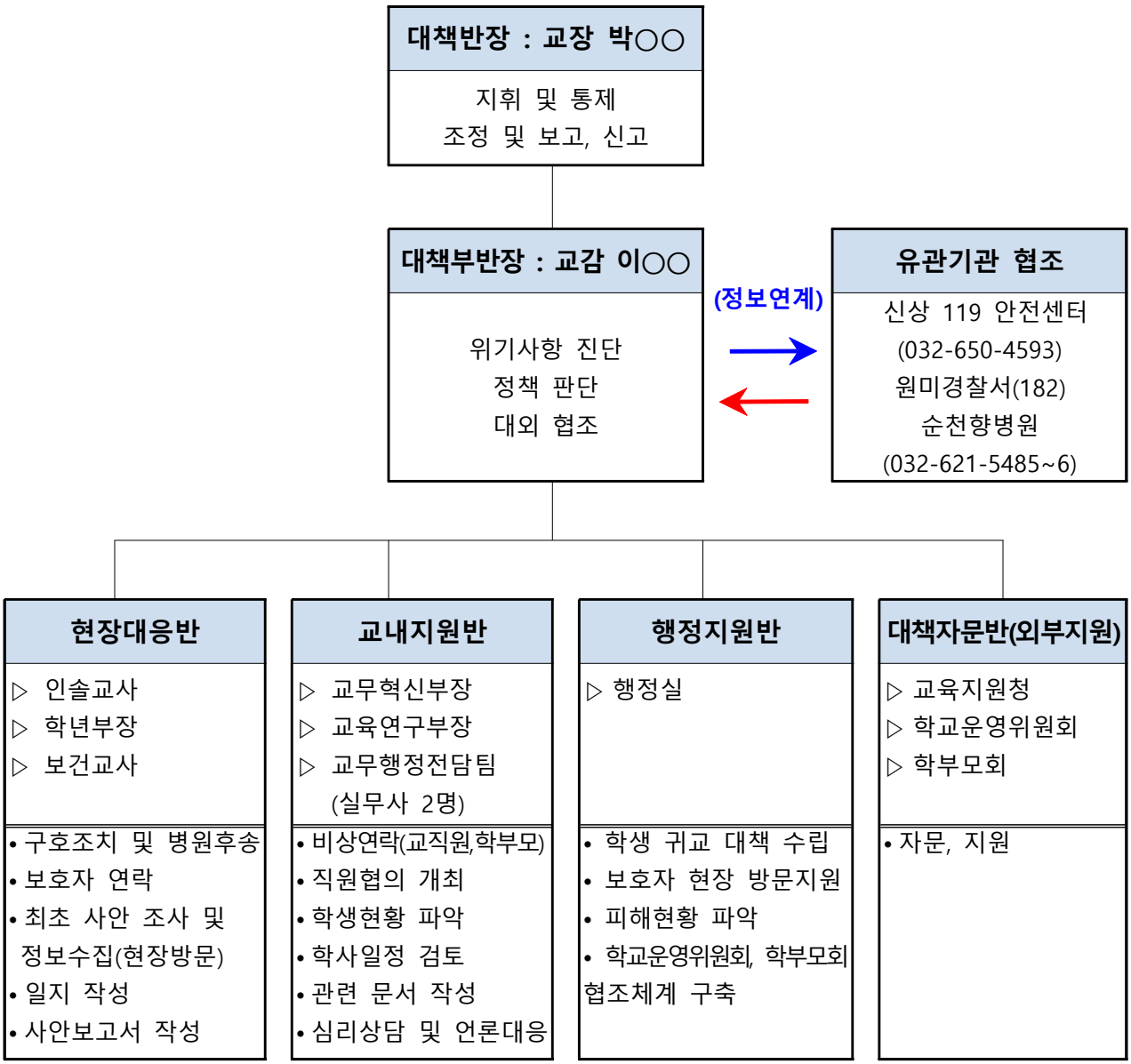
2 학교 안전 조직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

□ 평상시

○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는 학교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함. 학교의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 업무를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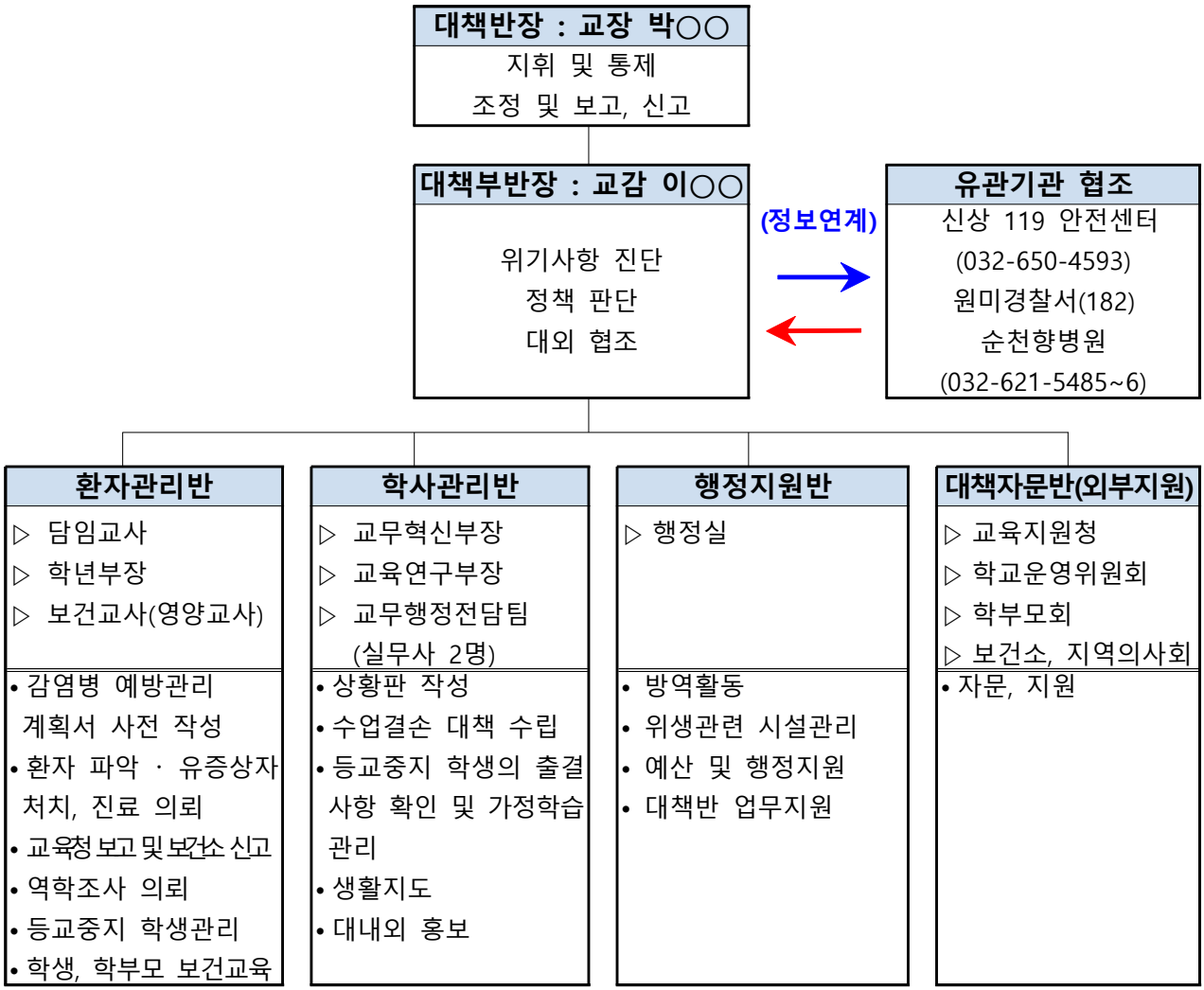
□ 유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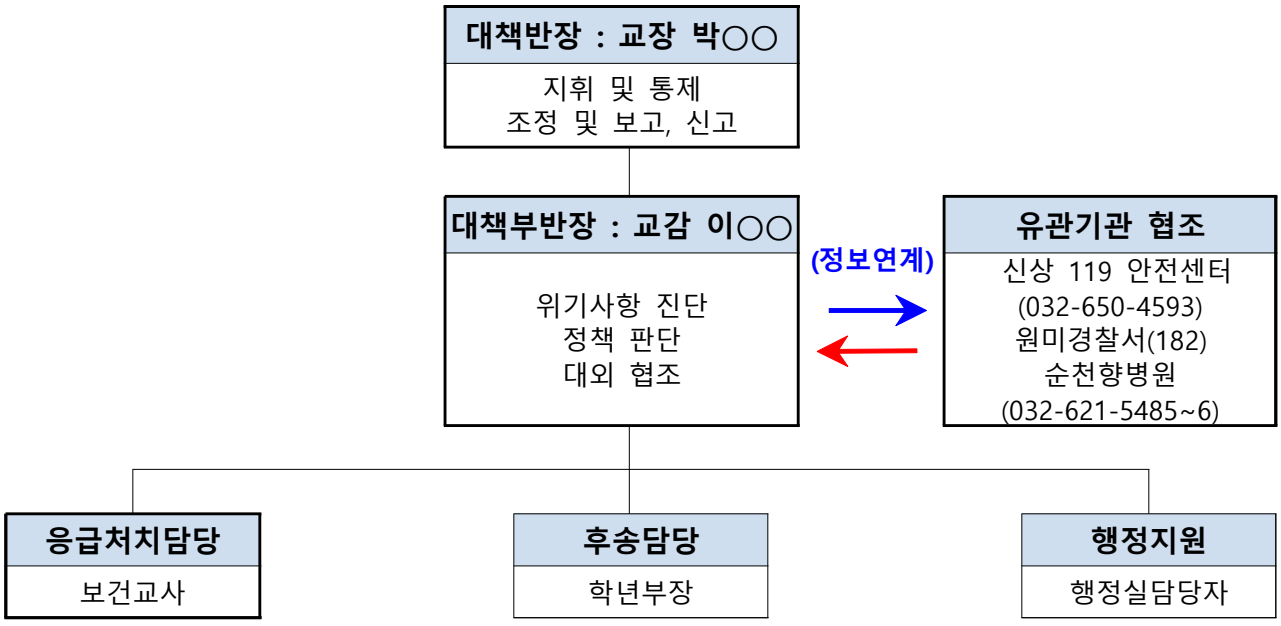
학교안전 관련 업부분장

직 책		임 무	비 고
최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5W1H, 소방방재청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 는 육하원칙
대책 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사고지휘자 역할 수행) 지휘자 역할 불가능시 적임자에게 권한 위임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팀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로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팀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팀장)	
현장 대응반	학년부장	- 현장대응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교사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교사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팀 일지 작성)	
	교사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보건교사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교내 지원반	교무부장	- 교내지원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무부장	- 관련 문서 작성	
	실무사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연구부장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반	행정실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반	교육지원청 안전센터	- 조치 방안 및 법률 지원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학교운영위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 (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학교식중독, 전염병 교내대책반의 구성 운영



응급구조체계 조직



유관기관 협조체계

○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구 분	기관명	연락처
국가재난정보센터	자연피해신고문의	02-2100-0769
국가재난정보센터	특정관리대상시설문의	02-2100-0494
소방서	신상 119 안전센터 부천소방서	032-650-4593 1577-9007
경찰서	원미경찰서 부천경찰서	182 032-680-7161
학교지정의료기관	순천향병원	032-621-5647

○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처

구분		업체명	연락처	비고
보안용역		㈜에스원	1588-3112	
전기		㈜하나전기안전기술단	031-922-0251	
가스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	032-345-0019	1년1회 정기점검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1577-0603	
냉난방		㈜하이엠솔루텍	032-432-7540	기기이상시 수리
식자재	농산물	경기농림진흥재단(재)	070-4603-4604	
	공산품	비에스유통	032-684-6911	매월 업체 재선정에 따라 변동됨
	축산물	농업회사법인(주)순우리한우	070-8670-6745	
	수산물	해정수산(주)	031-499-3273	
	공동구매	아이쿱친환경급식(주)	070-7452-7663	
	김치	장수식품(종가집 김치)	032-655-1573	
	쌀	오정농협협동조합	032-673-9937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 (동시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

사고 발생	→	상황 파악	→	상황 보고 (동시보고)
현장		학교		학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 (보고방법) 현장사고 상황파악 후 교육부 안전 대표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moe119@korea.kr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메일로 자동 전송

-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관 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PART Ⅱ

학교안전 현황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현황 : **학교안전 자가점검표로 대체**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 해당칸에 ✔를 표시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 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 스쿨존 내 안전시설 점검을 통한 미흡시설 개선 추진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 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각 실 책임자의 철저한 점검 및 미흡사항 발생 시 즉시 시설 개선 불시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응능력 훈련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실시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		✔			
	외부 체험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			

기본 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 지침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3. 학교안전 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안전 점검의 날'운영(수시)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		✔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되었는가?	✔		✔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		✔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생활 속에 스며드는 안전 문화 조성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 실시하였는가?	✔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			
5. 학교 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		✔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 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		✔			

기본 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			

1. 계획 수립 : ○ - 반영, × - 미반영
2. 전년도 실적 : ○ - 잘 추진했음, △ - 보통이다. × - 보통이하로 추진
3. 기본계획 각 호별로 전년도 해당학교의 주요 학교안전 추진 실적을 기재

영역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5.2.29. 기준	결과 (○/×)	향후대책
학교안전 사고예방 체제구축	1. SNS를 활용한 비상연락망 구축을 포함, 학교 비상 대책반을 구성·운영 함	○	
	2. 학교 내·외 위험성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 함	○	
	3. 안전관련 유관기관과(소방서, 경찰, 교통안전 공단 등) 협업이 잘 이루어 짐	○	
	4. 학교안전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누구나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음	○	
	5. 학교현황 및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계획이 잘 운영 됨	○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연수 내실화	6. 학생안전교육 관련 교육부 고시(2017-121)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함	○	
	7.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 할 수 있는 재난대응 훈련(안전교육)을 실시 함	○	
	8.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규정에 맞게 안전연수를 실시 함	○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조성	9.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절차와 지침을 준수 함	○	
	10. 비상배낭 구성 및 비치, 활용함(행정실)	○	
	11.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심리검사 결과 활용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 함	○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12.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작 전 모든 참석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함	○	
	13. 학교 안전주간을 내실 있게 운영 함	○	
	14.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포함) 피해자에 대해 심리치료 등 내실 있게 지원함	○	
	15.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대응방법, 교훈 등에 대해 자료를 누적 관리 하고 있음	○	
안전사고 발생 건수	*** 기준자료 :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 건 수**	* 전년 대비 증감에 대한 분석	
	- 2024.3.1. ~ 2024.2.28 발생 건 수 : 40 건	학교생활의 확대에 따른 증가	
	- 2023.3.1. ~ 2024.2.29 발생 건 수 : 17건	학교생활의 확대에 따른 증가	
	- 2022.3.1. ~ 2023.2.28 발생 건 수 : 13건	학교생활의 확대에 따른 증가	
	- 2021.3.1. ~ 2022.2.28 발생 건 수 : 1건	유의미 하지 않은 정도의 증감	
	- 2020.3.1. ~ 2021.2.28 발생 건 수 : 0건	유의미 하지 않은 정도의 증감	
	- 2019.3.1. ~ 2020.2.29 발생 건 수 : 13건	유의미 하지 않은 정도의 증감	

전년도 학교안전교육 추진실적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2023년)

구분 / 연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21.3. ~ 2025.2	2021	53	19	72	37	16	53	73.6%
	2022	61	14	75	46	0	46	61.3%
	2023	50	26	76	49	11	60	78.9%
	2024	53	23	76	34	19	53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교원은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제 강사를 말함

○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2023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637	53	28	81	634	53	19	72	99.5%	88.9%

○ 안전영역별·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2023년)

교육과정영역별 이수시간 / 안전영역(필수이수시간)	평균 교육현황	
	교육 시간(차시)	교육 횟수
생활안전(12)	22.17	22.17
교통안전(11)	15.5	15.5
폭력 및 신변보호(8)	14.16	14.16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10)	10.3	10.3
재난안전(6)	8.3	8.3
직업안전(2)	4.83	4.83
응급처치(2)	3.83	3.83
계(51)	79.09	79.09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학교안전사고 현황(2024년)

- 활동 시간별

활동별						합계
체육	쉬는시간	식사시간	기타	하교	그외	40
12	11	5	4	3	5	

- 활동 장소별

장소별						합계
일반교실	계단	강당	복도	특별교실	그외	40
9	8	6	5	3	9	

- 사고 형태별

행태별						합계
넘어짐	고정된 물체와 부딪힘	스포츠 활동 중 충격을 가함	이동중 충격을 가함	움직이는 물체와의 부딪힘	그외	40
9	8	6	4	4	9	

- 사고 행동별

행동별						합계
걷기/뛰기, 오르내리기	장난, 놀이	수업	축구	피구	그외	27
10	4	3	3	2	15	

- (학교안전사고 분석 결과)
 - 자주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유형의 안내 및 안전 교육 강화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2023)

- 생활안전

조사문항		구분	석천	부천 교육청	경기 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	외부추락방지장치 설치	설치(%)	V	91.6	89.6	82.8
		일부설치(%)		0.8	2.7	4.9
		미설치(%)		1.7	2.2	3.9
		해당없음(%)		5.9	5.5	8.3

경	손끼임 방지장치(건물현관)	모두 설치(%)	V	86.6	82.0	75.6
		일부 설치(%)		8.4	10.5	14.2
		미설치(%)		5.0	7.6	10.2
	손끼임 방지장치(교실)	모두 설치(%)		56.3	55.2	51.4
		일부 설치(%)	V	13.4	16.4	17.2
		미설치(%)		30.3	28.4	31.4
	환기장치 설치여부(급식실)	설치(%)	V	77.3	86.3	85.6
		미설치(%)		0.0	2.2	3.5
		해당없음(%)		22.7	11.5	11.0
	환기장치 설치여부(조리실)	설치(%)	V	96.6	94.6	94.2
		미설치(%)		0.0	0.2	0.4
		해당없음(%)		3.4	5.2	5.4
교육환경	학교안전 관련 교직원간 협의횟수 ※1학기기준응답값*2	횟수(회)	6.0	5.1	4.7	4.8
	학교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의횟수 ※1학기기준응답값*2	횟수(회)	2.0	2.6	2.7	2.3
	학사일정별 교육활동 안전대책 수립	모두수립(%)	V	95.8	97.3	95.8
		일부수립(%)		4.2	2.7	4.1
		미수립(%)		0.0	0.0	0.1
	학사일정별 사전안전교육 실시	모두실시(%)	V	99.2	99.0	98.5
		일부실시(%)		0.8	1.0	1.4
		미실시(%)		0.0	0.1	0.0
	교직원의 안전관련 역할,임무 인지 및 공유	모든교직원(%)	V	95.0	97.7	97.4
		일부교직원(%)		3.4	1.8	2.1
		안전담당자만 공유(%)		1.7	0.4	0.5
		미공유(%)		0.0	0.0	0.0
	안전부(장) 전담	겸임(%)	V	79.0	78.7	80.8
		전담(%)		21.0	21.3	19.2
	안전관련 동아리 운영	운영(%)		8.4	11.4	12.1
		미운영(%)	V	91.6	88.6	87.9
	안전관련 행사(캠페인 등) 운영	운영(%)	V	84.0	84.4	79.1
		미운영(%)		16.0	15.6	20.9
	안전교육용 온라인 자료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V	86.6	84.5	84.0
		공공기관 자료(%)	V	74.8	65.6	54.5
		민간 교수학습 자료(%)	V	52.1	40.6	37.2
		SNS(%)	V	69.7	65.3	62.5
		기타(%)	V	37.0	30.1	32.3
	학교안전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반영 여부	반영(%)	V	91.6	94.6	94.4
		미반영(%)		8.4	5.4	5.6

○ 교통안전

조사문항		구분	석천	부천 교육청	경기 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교내 보차도 분리	물리적분리(%)	V	90.8	81.6	73.4
		임시분리(%)		6.7	13.5	18.2
		미분리(%)		2.5	4.9	8.4
	교외 보차도 분리	분리(%)	V	89.9	85.7	75.8
		일부분리(%)		6.7	11.4	18.5
		미분리(%)		3.4	2.9	5.7

	교외 무단횡단 예방시설(보도용 방호울타리 등) 설치	모두설치(%)	V	79.0	71.6	61.5
		일부설치(%)		15.1	20.1	24.7
		미설치(%)		5.9	8.3	13.8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유・초・특수학교대상	모두지정(%)	V	94.3	90.4	87.5
		일부지정(%)		4.5	7.8	10.0
		미지정(%)		1.1	1.7	2.5
	학교주변 과속방지 시설 설치	모두설치(%)	V	88.2	83.0	77.7
		일부설치(%)		10.9	13.5	17.2
		미설치(%)		0.8	3.5	5.0
	학교주변 과속단속장비(CCTV) 설치	모두설치(%)	V	73.1	69.6	62.5
		일부설치(%)		15.1	17.2	19.5
		미설치(%)		11.8	13.2	18.0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단속장비(CCTV 등) 설치	모두설치(%)	V	75.6	60.7	49.9
		일부설치(%)		15.1	20.1	22.0
		미설치(%)		9.2	19.2	28.0
	통학버스 운행	운행(%)		8.4	22.0	38.6
		미운행(%)	V	91.6	78.0	61.4
	통학버스 동승자여부 ※유・초・특수학교대상	있음(%)	.	90.0	94.6	96.2
		없음(%)	.	10.0	5.4	3.8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 ※유・초・특수학교대상	설치(%)	.	100.0	92.8	93.9
		미설치(%)	.	0.0	7.2	6.1
	서행표지판 설치여부	설치(%)	V	57.1	70.7	66.1
		미설치(%)		42.9	29.3	33.9
교육 환경	등교 교통지도 실시	실시(%)	V	95.8	96.8	95.4
		미실시(%)		4.2	3.2	4.6
	하교 교통지도 실시	실시(%)	V	75.6	81.4	84.3
		미실시(%)		24.4	18.6	15.7
	등·하교 시 승·하차 공간 마련	마련(%)		44.5	47.7	52.9
		부재(%)	V	55.5	52.3	47.1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2023)	사고건수(건)	0.0	0.03	0.14	0.09
		사망학생(명)	0.0	0.01	0.0	0.0
		부상학생(명)	0.0	0.02	0.13	0.08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반경 300m 이내(건)	0.0	3.93	1.95	1.79

◎ 폭력 및 신변안전

조사문항		구분	석천	부천 교육청	경기 교육청	전국
학교 시설 환경	인근 경찰서에서 학교까지의 도착시간	5분 이하(%)	V	62.2	59.9	67.3
		6~10분(%)		32.8	32.7	26.7
		11~15분(%)		3.4	5.9	4.5
		16~20분(%)		0.8	1.2	1.2
		21분 이상(%)		0.8	0.3	0.3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중복응답)	학교 출입구(교문) 부근(%)	V	57.1	52.0	67.1
		학교 중앙현관 부근(%)	V	61.3	64.5	45.3
		관리하지 않음(%)		1.7	0.9	0.9
	학교출입구(교문) 개수 및 관리되는 출입구 개수	총 출입구(개)	4.0	2.3	2.2	2.1
		관리되는 출입구(개)	4.0	1.9	1.8	1.7
	CCTV 안내판 설치	설치(%)	V	94.1	95.2	95.0

		미설치(%)		5.9	4.8	5.0
	출입·방문절차 안내판 설치	설치(%)	V	92.4	95.0	94.0
		미설치(%)		7.6	5.0	6.0
	[실내] 전체 CCTV, 200만 화소 이상 CCTV	실내 전체(대)	5.0	5.1	9.5	10.9
		실내 200만 이상(대)	5.0	4.7	9.1	10.2
	[실외] 전체 CCTV, 200만 화소 이상 CCTV	실외 전체(대)	10.0	10.3	12.3	12.3
		실외 200만 이상(대)	10.0	9.6	11.8	11.8
교육환경	학생보호인력 운영여부	운영(%)	V	92.4	87.4	83.9
		미운영(%)		7.6	12.6	16.1
	학생보호인력 운영시간(시간/일)	시간(시간)	5.0	5.2	5.1	7.0
	외부인 통제 및 학생보호 인력 운영 어려움 여부	어려움 없음(%)	V	68.1	72.1	79.8
		어려움 있음(%)		31.9	27.9	20.2
	상담교사,전문상담인력 운영여부 ※초・중・고・특수학교대상	운영(%)		75.3	80.1	72.8
		미운영 (지역 Wee센터 등 활용)(%)	V	23.6	15.2	22.5
		미운영 (조치사항 없음)(%)		1.1	4.7	4.7
	상담교사,전문상담인력 운영시간(일/1주) ※초・중・고・특수학교대상	시간(일)		4.7	4.5	4.6
	연간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건수(건)	0.0	0.2	0.1	0.1
	학교주변 1km 내 성범죄자 수	범죄자 수(명)	1.0	3.6	1.4	1.4
		조회불가(%)		16.8	19.6	17.7
	학교 실내체육시설 외부 개방 여부	개방(%)	V	11.8	12.7	19.7
		미개방(%)		72.3	76.2	68.3
		해당시설 없음(%)		16.0	11.1	12.0
	학교 실내체육시설 개방 시, 외부인/학생 분리대책 여부	시간 분리(%)	V	78.6	91.7	93.9
		동선 분리(%)		0.0	14.7	13.0
		기타(%)		0.0	3.4	2.3
		없음(%)		21.4	3.6	2.1

○ 재난안전

조사문항		구분	석천	부천 교육청	경기 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인근 소방서에서 학교까지의 도착시간	5분 이하(%)	V	60.5	44.6	49.9
		6~10분(%)		28.6	42.2	38.1
		11~15분(%)		5.9	10.2	8.7
		16~20분(%)		1.7	2.2	2.3
		21분 이상(%)		3.4	0.8	1.0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로 교내 화재 발생 시 대응 가능여부	모든 건물 대응 가능(%)	V	95.0	95.9	94.4
		일부 건물 대응 가능(%)		5.0	4.0	5.4
		대응 불가(%)		0.0	0.1	0.3
	피난안내도 게시(본관)	층별게시(%)	V	88.2	89.8	82.6
		건물별게시(%)		10.1	8.1	12.3
		미게시(%)		1.7	2.1	5.1
교육환경	전교생 대상 재난대비훈련 실시횟수	전년도(회)	2.0	3.4	3.4	3.8
		올해(회)	2.0	3.8	3.6	4.0

직업안전

조사문항		구분	석천	부천 교육청	경기 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실험실습시설 보호구 지급 및 사용여부 ※초・중・고・특수학교대상	모두사용(%)	V	88.8	88.3	88.1
		일부사용(%)		11.2	10.3	9.9
		사용안함(%)		0.0	0.6	0.5
		시설없음(%)		0.0	0.9	1.5
	실험실습시설 분진제거장치 설치여부 ※초・중・고・특수학교대상	설치(%)		40.4	34.6	30.9
		일부설치(%)		14.6	12.6	13.5
		미설치(%)		34.8	35.1	36.1
		시설없음(%)	V	10.1	17.6	19.5
	실험실습시설 유해화학물질 환기장치 설치여부 ※초・중・고・특수학교대상	설치(%)	V	73.0	71.8	69.1
		일부설치(%)		13.5	14.6	16.0
		미설치(%)		11.2	8.9	9.7
		시설없음(%)		2.2	4.7	5.3
	실험실습시설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초・중・고・특수학교대상	설치(%)	V	87.6	88.7	87.8
		일부설치(%)		9.0	8.8	9.5
		미설치(%)		2.2	1.0	0.9
		시설없음(%)		1.1	1.6	1.7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내 별도보관함 설치여부 ※초・중・고・특수학교대상	설치(%)		86.5	89.0	88.8
		일부설치(%)		9.0	7.4	7.3
		미설치(%)		1.1	0.6	0.5
		시설없음(%)	V	3.4	3.1	3.4

응급처치

조사문항		구분	석천	부천 교육청	경기 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심장자동충격기(AED) 설치여부	전체건물(%)	V	62.2	60.5	54.6
		일부건물(%)		27.7	32.1	37.6
		미설치(%)		10.1	7.4	7.8
교육환경	보건교사 운영여부	운영(%)	V	81.5	84.0	77.1
		미운영(%)		18.5	16.0	22.9
	보건교사 운영시간(일/1주)	시간(일)	5.0	5.0	4.94	4.8

PART Ⅲ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1 안전한 학교 특색사업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비 전	**행복한 학생 안전한 학교**
목 표	**바름·앎·새로움으로 꿈을 펼치는 행복나눔공동체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
전 략	○ 학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 ○ 교육공동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학교 ○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학교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① 경기도안전교육과정의 안착**
	②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③ 교육공동체의 안전 대응 역량 신장
	④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교육활동 안전 강화	**① 방과후학교 및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강화**
	② 체험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

세부 추진과제

○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 **경기도안전교육과정 운영 :** 경기도안전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교 안전교육과정 재구성
- 교육과정(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내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교육의 생활화
- 교육부 고시(2017-121)에서 제시한 학생 7대 안전교육 영역의 시간과 횟수를 적용하여 안전교육과정 재구성

■ **학생 7대 안전교육 운영 :**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교육 생활화 (교육과정과 연계)

◩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교육부 고시 2019-214호 별표1) ◪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운동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	12	11	8	10	6	2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수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정 운영 :** 수영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재구성 및 '생존 수영 표준 교육과정' 적용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바다, 계곡, 하천, 워터파크 등 수상 안전교육 시행
 · 물놀이 위기 상황 시 적극 대처 방법 교육
 ·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한 학생주도 사례별 안전사고 대처 학교 자체 매뉴얼 작성
 · 생존수영 수업 확대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병행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적극 홍보
 · 학생 ·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 되도록 적극 안내
 · 안전사고 주의보 : 학생 · 학부모 주기적 문자(유튜브 등) 발송
 · 여름 방학 전 집중안내 및 교육

<학생주도 안전실천>

- 학생 주도의 사례별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제작을 위한 세부적 활동 계획 수립
 ·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한 학생주도 사례별 안전사고 대처 학교 자체 매뉴얼 제작

■ **실험·실습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 과학 교재 교구 및 안전장구 확보를 포함한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 과학실 안전점검(월 1회),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주 1회)실시
- 과학실험 시작 전 5분 안전교육 실시
- 교직원 및 과학실 사용자 대상 과학실험실 안전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시약관리를 위한 안전장구 및 설비 확충(밀폐시약장, 흄후드 등)
- 수은 함유제품, 폐수 폐시약 별도 보관장소 마련 및 시건 철저
- 과학실 안전수칙, 응급대처요령, 비상연락망, 실험안전매뉴얼,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게시 활용 교육
-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초등과학전담교사 배치
-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과학실 안전 집합 및 원격연수에 참여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길잡이」기반으로 안전 계획 수립 이행
- 체육활동 안전사고란, 체육활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총칭
- 대상(연령), 종목특성, 장소, 계절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실천이 필요함

<학생주도 안전실천>

- 준비운동 철저, 무리한 동작과 신체활동 자제, 휴식과 영양 공급, 주의 집중, 긴장 예방, 장비 및 시설 점검

■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 안전 연수 의무 이수 :** 교직원의 안전연수 의무 이수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이상 안전 연수 의무 이수(3년 주기)
- 근거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동법 시행규칙」제2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제4조
- 교직원 안전교육 3주기(2024.3.1.~2027.2.28.) 도래
- 3주기(2024.3.1.~2027.2.28.) 동안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의무 이수
 : 안전 7대 영역[참고1] 중 3개 영역 이상 포함하여 15시간 이상 의무 이수
- 교육대상자별로 교육 이수

대 상		법적 의무 이수시간	방 법
1.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3년마다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원격연수, 자체연수 (전문가 초빙)
2. 계약제 교직원 **[학교만 해당]** ※ 기간제교사, 강사, 교육공무직원 등	3년 이상 근로 계약 종사자 (무기계약직 등)	**3년마다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 3년 미만 계약 종사자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또는 **1년에 4시간 이상**	
	6개월 미만 계약 종사자	없음	학교·기관 자율 실시
3. 교육활동참여자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조리직원 등)		**연간 1회 이상**	학교 자체 연수 (연수자료 활용)

■ **교직원 · 학부모 응급처치교육**

-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연간 4시간 (실습 2시간 이상)
- 상 · 하반기 중 '찾아가는 학부모 안전교육' 도교육청에 신청 하여 실시 예정

■ **아동학대 예방교육 :** 교육공동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 의무 강화

-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생교육 연 4시간 이상*
 * 아동의 안전 교육 규정('성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 8시간 이상)에 의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실시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연 1회 이상*
 * 아동학대 인식 제고 연수, 신속한 사안 대처 및 피해아동 보호·치유 지원
- (학부모 대상)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실시*
 * 예시: 학부모 뉴스 레터 활용 가정 통신문 발송, 학부모 모임 시 교육 등
- (신고) 아동학대 발견 또는 의심 사안 발생 시 112에 즉시 신고

<학생주도 안전실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신고

- 부모, 교사로부터 학대 의심 시 교사와 협의 하도록 수시 교육 실시
- 자기 돌봄, 자기 존중감 형성을 위한 활동 실시 (교과활동, 창체 등 다양한 시간 활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주도,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적용(연간 11차시 이상 운영)
- 언어문화 개선,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교우관계 회복기관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노력
- 친구사랑 주간 운영(4월, 9월)

■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관리

- 특수교육보조인력 활용으로 학생이동 및 교육활동 안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사안별 대처 방법 계획 수립
- 교문 이탈 학생에 대한 대응시스템 운영
-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학생별 맞춤형 재난 대응 지원 방안 학교안전계획에 반영
- 특수학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자율적 참여
-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환경 개선

○ 교육활동 안전강화

■ 돌봄 및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강화

- 돌봄 및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등 안전계획(출결관리, 안전사고 예방, 귀가 지도 등) 포함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대비
 - 앱(APP), 문자 서비스(SMS) 제공,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용, 가정통신문 등 적극적인 학생 안전관리 대책 강구, 출입통제 시설(비상벨, 비디오폰) 설치
 -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 확보, CCTV나 방화 차단막 등을 활용한 안전사고 대비
 - 인근 경찰 지구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안전 관리 체제 구축
 - 실험·실습실 활용 시 안전관리 점검표·매뉴얼 활용 및 관리책임자와 협조 운영
-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 구매가이드(식품의약품안전처 배부) 준수
 - 도시락 구입시 식품안전나라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업체 확인
 -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구입 시 식품안전나라에 영업신고된 음식점인지 확인, 한 음식점에서 10인분 미만으로 구매, 여러 음식점에서 나누어 구매
 - 구매한 간식·도시락은 적정온도에서 보관, 모든 음식 1인 분량 보관(-18℃ 144시간 이상 보관)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숙지
 - 사고 발생 시 선조치 후보고 대응
 - 학교 안전사고 대응 및 보고 체계에 따른 조치 사항 숙지
- 불가피한 자연재해 대처를 위한 안전관리
 -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기관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 활동 자제
 - 태풍, 지진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미운영)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
-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안전 조치 이행
 - 석면공사, 냉난방기 교체, 내진 보강, 창호 교체, 도색 공사 등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
-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자체연수 실시 및 학생안전관리 사항 안내
 - 방과후학교 강사 준수사항 안내 시 포함하여 안내(실험·실습실, 전용교실을 활용한 경우, 안전 관련 수칙 등을 별도로 안내)

■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 학생 주도적으로 기획·운영
- 사전 인솔자 안전연수 및 학생 안전교육 철저
- 현장체험학습 비상 배낭 구비(학년 또는 학급 단위 상시 휴대)

※ 예시 : 로프(10m), 비상용 망치, 비상용 칼, 구급약품, 비상 연락망, 학교 자체 안전계획, 무전기 등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에게 교육 자료와 현장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
- 학생 7대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체험학습 전·중·후 과정에 따른 교육 실시

<학생주도 안전실천>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예시) 나의 안전지수 알아보기, 토의·토론 기반 안전교육 실시
- ■ 이동 중 체험 현장에서 각종 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토의 토론
- ■ 시나리오 작성하기(교통편, 동선, 방문지, 위기 상황 설정 등)
- ■ 퀴즈, 일문일답, 게임을 통한 위기 시 대응방안 역할 분담 익히기
- ■ 역할극을 활용한 화재 발생 시 대처법, 비상탈출 방법, 신고요령 등 교육

■ **체험중심 재난대응 훈련 :** 학생 스스로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안전 조치 능력 배양

-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 및 체험하는 실질적 훈련 실시
- 학생·현장 중심의 훈련 과제 수행(학생자치훈련, 안전주제토론 등)
- 재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문화 활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학생 주도 토론으로 '안전행동매뉴얼' 작성 및 '학생자치훈련' 실시
 · 다양한 위기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학생 스스로 학교별, 학급별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능동적 대처능력 배양
 · 학생 스스로 '안전행동매뉴얼' 작성 후 훈련해 보는'학생자치훈련'실시
- 학생이 참여 하는 '학교안전진단'과 '안전대피지도'작성
 · 학교안전 점검과 진단 활동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 안팎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예방 활동
 · 학생자치회와 학생 동아리 주관 '안전대피지도' 제작 및 캠페인, 안전제언 등 활동 실시

<화재대피 훈련>

- 교직원, 학생 등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 · 화재통보 · 피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계획

과 제	추 진 내 용	시 기	대 상	비 고
안전관리 기능 강화	· 교육현장 관리감독 강화 · 위험 시설,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강화 · 학생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체제 강화	연중	전교생	전 교직원이 때와 장소에 관 계 없 이 학생 안전 교육을 수시 실시한다. 다양한 교육 자 료 들 을 활 용 하 여 교육을 실시 한다. 학 생 들 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통안전 교육 개선 및 내실화	· 교육과정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보** · 체험 교육기회의 교통안전 교육 충실 ·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 활용 ·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활용)	연중	전교생	
범국민 안전점검의 날 운영	·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 · 학교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의 가능성 최소화	매월 4일	전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교육 실시	· 가정 연계지도(가정통신문, 학교/학급 홈페이지) ·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교육 관련 체험학습, 초빙교육 등을 통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도로공사, 소방서 등)	연중	전교생	
시간대별, 장소별 안전 관리 철저	· **학급 조, 종례 시간** - 수시 안전지도 · **실습시** - 실습시 안전 지도 및 관리 철저, 안전 장구를 활용하여 위험 최소화 · **체육활동시** - 충분한 준비, 마무리 실시, 경기규칙, 올바른 운동법과 안전수칙 교육 · **과학수업시** - 기구와 약품 관리 철저, 과학실에서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철저, 안전장구 활용하여 위험 최소화 · **쉬는 시간** - 복도와 계단에서의 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관리 철저, 점심시간 안전지도 실시 · **청소 시간** - 담임교사의 임장 지도 철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한 청소 구역 배치(예 : 창문 닦기 제외), 청소 용구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 및 청소 용구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체험학습** -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담임교사 책임하에 체험학습 당일 안전관리 철저 · **방학 중** - 계절별 안전교육 철저, 물놀이, 빙상, 화재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	연중	전교생	
재난대비 교육 강화	· 소방・재난대비 훈련 실시 · 민방위교육 실시	2회 4회	전교생	
신종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	·「킥보드」,「인라인 스케이트」등 이용시 안전장구 착용 지도/ 문구, 완구 사용에 대한 안전지도 철저	연중	전교생	
외부인 출입 및 성폭력 예방 대책 강화	· 외부인 출입 통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육 ·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한 홍보 ·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교내 성폭력 예방	연중	전교생	

생존수영 안전교육

- 추진목적 : 생존수영교육을 통한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자기 생명 보호 능력 향상
- 수업목표 : 위기 상황에서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영법에 상관없이 10m 수영하기
- 추진대상 : 초등 3~4학년 학생 (대상 확대여부는 교육청 지침에 따름)
- 일정별 안전교육 계획(안)

	날짜	대상	내용	장소	비고
1	2025년3월		- 수영교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 수영장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업무담당자 3,4학년 부장
2	교육 시작 전	학생, 학부모	- 수영교실 참여희망원 가정통신문 발송		업무담당자
3	교육 시작 전	담임교사 특수교사	- 인솔자 사전교육 및 역할분담 안내 - 비상대피로 확인	학년연구실	학년부장
4	교육 시작 전	인솔자 모두	- 인솔자 사전 안전연수	교장실	학교장
5	교육 시작 전	학생	- 도보 이동 시 안전 요령 - 차량 이용 시 안전 요령(교통안전) - 수영장 이용 시 안전 요령(시설안전) - **성폭력 예방 교육**	각 교실	담임 특수교사
6	교육 시작 전	학생, 학부모	- 실시 일정 및 안전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업무담당자
7	교육 시작 전	학생	-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 심폐소생술	각 교실	담임교사 특수교사
8	교육 시작 전	담임교사 특수교사	-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 심폐소생술	강당	교직원연수 참여로대체
9	매 수업일	학생	- 수업 전 안전 대응 숙지 - 수업 중 교육 프로그램 성실히 참여 및 안전 교육내용 준수 - 수업 후 활동 반성	교실 버스 수영장	담임교사 전문강사 특수교사 특수지도사 장애학생 도우미
10	매 수업일	담임교사 특수교사	- 수업 전 사전 안전교육 - 수업 중 임장지도 및 수시 건강상태 파악 사고예방 - 수업 후 안전평가 - 매일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교실 버스 수영장	담임교사 전문강사 특수교사 특수지도사 장애학생 도우미
11	매 수업 후	담임교사	- 실제 실기수업 참여 학생 및 교사 인원 행정실 보고(참관 학생은 참여로 간주)		담임교사
12	교육 종료 후	학생, 학부모, 교사	- 안전교육 평가 및 수영수업 결과 설문		업무담당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육자료(체험학습 현장정보)등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한다.

- 학부모 홍보(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교육(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을 실시
-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
-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안전사고 및 재난시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
- 정부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안전디딤돌) 활용 권장
- 토의·토론 기반형 체험학습 안전 교육을 실시

■ 시나리오 작성하기(교통편, 동선, 방문지, 위기상황 설정 등)
■ 퀴즈, 일문일답, 게임을 통한 위기시 대응방안 역할 분담 익히기(신고자, 구조자, 응급처치자 등)
■ 역할극 등을 활용한 비상시 대처법 익히기 (화재 시 대처법, 비상 탈출법, 신고 요령 등)

○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도한다.

○ 사전교육을 통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행동요령을 전달한다.

■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 인솔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에 성실히 따른다.
■ 안전사고 발생시, 인솔 · 지도 교사에 즉시 보고한다.
■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각종 돌발사고 발생 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지시에 따른다.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다중 이용 시설(숙소, 식당,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는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항공기 탑승 시에는 '기내반입 금지물품(문구용 칼·가위, 폭발성 물질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 운행 당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출발 전 학교장은 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로 하여금 별첨 서식 차량안전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점검(차량점검표는 학교에 보관)
-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유사시 차량 비상 탈출법, 안전벨트 및 차량 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사 확인,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대열운행 · 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지도
- 학교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 측정 및 에스코트 신청

재난 대비 훈련 연간계획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토론기반훈련	모든 교직원		
4월	황사·미세먼지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5월	소방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소방서 합동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9월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대응 훈련	토론기반훈련	체험학습 지도교사		
9월	소방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자체 훈련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워크숍 및 현장훈련 등	모든 교직원과 학생		CPR
11월	실험·실습안전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 학교 재난 대비 훈련 담당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 · 훈련 매뉴얼」(교육부)을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 **(매뉴얼 위치 : 교무실)**

안전약자(요보호학생) 현황 및 관리방안

○ 무단이탈 및 교출 학생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여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호 한다.

○ 장애학생 등·하교 방법을 파악하고 보호자와의 신속한 교류를 통하여 등하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학교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도사 등 교내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교직원 협력, 관할 경찰서 및 학교 지킴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안심 알리미 서비스 및 학교지킴이, 학부모 봉사단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무단이탈을 예방한다.

○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외울 수 있도록 하되 못 외울 경우 미아방지 목걸이나 이름표를 소지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안내한다.

○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 교육활동 중 무단이탈 발생 시에는 가정, 학교와 연락을 취하고 가까운 경찰지구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신고센터(182)에 신고한다.

○ 그 밖의 무단이탈에 관한 예방 등을 위하여 사전 점검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요소 등을 학교와 연계하여 조사한다.

○ 각종 행사, 실습, 현장학습 등에 관한 안전교육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하여 학생 안전 지도를 철저히 실시한다.

○ 특수교육지도사 등 장애학생 보조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교내 교직원 장애이해연수, 별도의 연수 참여, 학생별 안전 지도 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안전 문화 확산

○ 학교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

■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안전한 학교

- 학생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여건 조성
 ·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안전 문화제고 노력
 · 축제 등 학생 주관 행사 시 안전계획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 노력
- 학교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학생 주도 안전실천 교육활동 운영
 · 학생이 계획하고 참여하는 학교안전주간, 친구사랑주간 운영(설문조사, 캠페인, UCC공모전, 예보제 제작.발표 등)
 · 안전 관련 자율동아리를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소화기사용법 등 안전 실천 활동
- 체험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학생 스스로 토론하여 '안전행동매뉴얼' 작성 . 학생자치훈련 실시
 · 학생이 참여 하는 '학교안전진단'과 '안전대피지도'작성

■ 행사,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 놀이 한마당, 동아리 축제,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 시 계획 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 시행
- 행사 시작 전 참석자 대상 1분 안전 교육 : 대피로, 소화기의 위치, 안전 관련 간단한 지식 등
- 학부모 연수 시 동영상, 리플렛 등을 이용하여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학생주도 안전실천>

- 축제 등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 시 안전계획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 노력

※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교육내용 또는 안전실천 방법 논의 후 계획 수립에 반영 등

■ 체험중심·반복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 체험형 재난 안전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기자재 구입 후 관내 학교에서 기자재 공유 요청 시 적극 공유
- 주1회 이상 조·종례시간, 관련 교과시간,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하여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매일 교육 적극 권장)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짧은 시간, 반복적인 교육으로 안전생활 습관화 및 위기 시 대응능력 신장

※ 나.침.반 :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 주1회 이상 아침시간, 관련 교과시간,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하여 5분 안전교육 실시
- 가정연계 교육자료, 체험형 안전교육프로그램, 동영상 자료 등 활용

○ 학교 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안전점검의 날'운영

- '안전점검의 날' 연간 계획 수립 및 매월 '학교 안전점검의 날'실시
-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예방교육 및 기관 시설물 안전점검을 자율적으로 운영

<학생주도 안전실천>

- 학생이 주도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교육 실시
- 학생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전개

◩ 구성원별 역할 ◪

구성원	역 할 (임무)
교육행정실장, 시설 및 소방담당	▸ 전체 시설 세부 점검,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담임교사	▸ 아침·하교시간 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교육행정실장	▸ 점검결과 기록 유지 확인, 점검결과 확인 및 학교장 보고
시설 및 소방담당	▸ 점검결과 기록 및 교육행정실장 보고
담임외 교사	▸ 교과교실 및 특별실 안전점검(과학실, 급식실, 체육관 등)
학생, 학부모	▸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 **'학교 안전주간' 운영 :** '학교 안전주간'을 지정하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연1회)
<학생주도 안전실천> 학생들의 창의적인 기획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주간 운영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계획

- 다중밀집 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행사 진행 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간격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학교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졸업여행, 교외 행사장 방문 등

- 사고 발생 시 119신고 및 응급조치(참고2) 등 상황에 맞는 응급조치 실시
-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교육 실시

- 학교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졸업여행, 교외 행사장 방문 등에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 간격을 유지하기
-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앞 사람과의 간격 유지하며 걷기
- 움직일 수 없거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 벗어나기
-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의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며 걷기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상황 알리기
- 팔짱을 끼거나 가방, 옷 등으로 흉부 보호하기
- 넘어졌을 때 위험성 줄이기 위해 몸을 작은 자세로 웅크려 보호하기
- 운동화처럼 편하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신발 신기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학교안전교육 연간 계획

운영내용	실천계획	대 상	목표	시기	담당자
안전교육	▪ 안전교육 연간계획 수립	전학년	1회	3월	담당자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안전교육 운영 - 교과 및 교육과정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전학년	연중	수시	담임
	▪ 학교생활 안전 매뉴얼 활용 교직원 연수 실시	교직원	1회	3월	담당자
	▪ 방학 전, 계절별 중점 안전교육 실시	전학년	2회	7월, 12월	담임
	▪ 교통안전교육 안내 및 안전 가정통신문 배부	전학년	연중	수시	담당자
	▪ 각 교실 소화기 비치 및 소방안전 예방 교육	전학년	연중	수시	담임
	▪ 각 교실에서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 및 가정연계 교육자료 배부	전학년	매월	수시	담임
교통안전	▪ 교통 봉사(녹색어머니회) 조직・ 운영	전학년	연중	3월	담당자
	▪ 배움터 지킴이 교통 지도 투입 - 등하교	지킴이	연중	연중	담당자 지킴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	전학년	3회	5, 8, 11월	담당자
	▪ 학교안전점검의 날 운영	전교사	10회	매월 4일	전교사
	▪ 외부기관과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 - 교통안전교육	전학년	2회	6월	담당자
	- 소방안전교육			9월	담당자
안전 보호 지원 구축	▪ 배움터 지킴이 선발 운영 - 배움터 지킴이의 학교 출입 통제 및 교내외 순찰 강화	지킴이	1회	연중	지킴이
	▪ CCTV 24시간 연중 모니터링	교내 전지역	연중	연중	담당자
	▪ 연제 경찰서와 연계 체제 강화	전학년	연중	수시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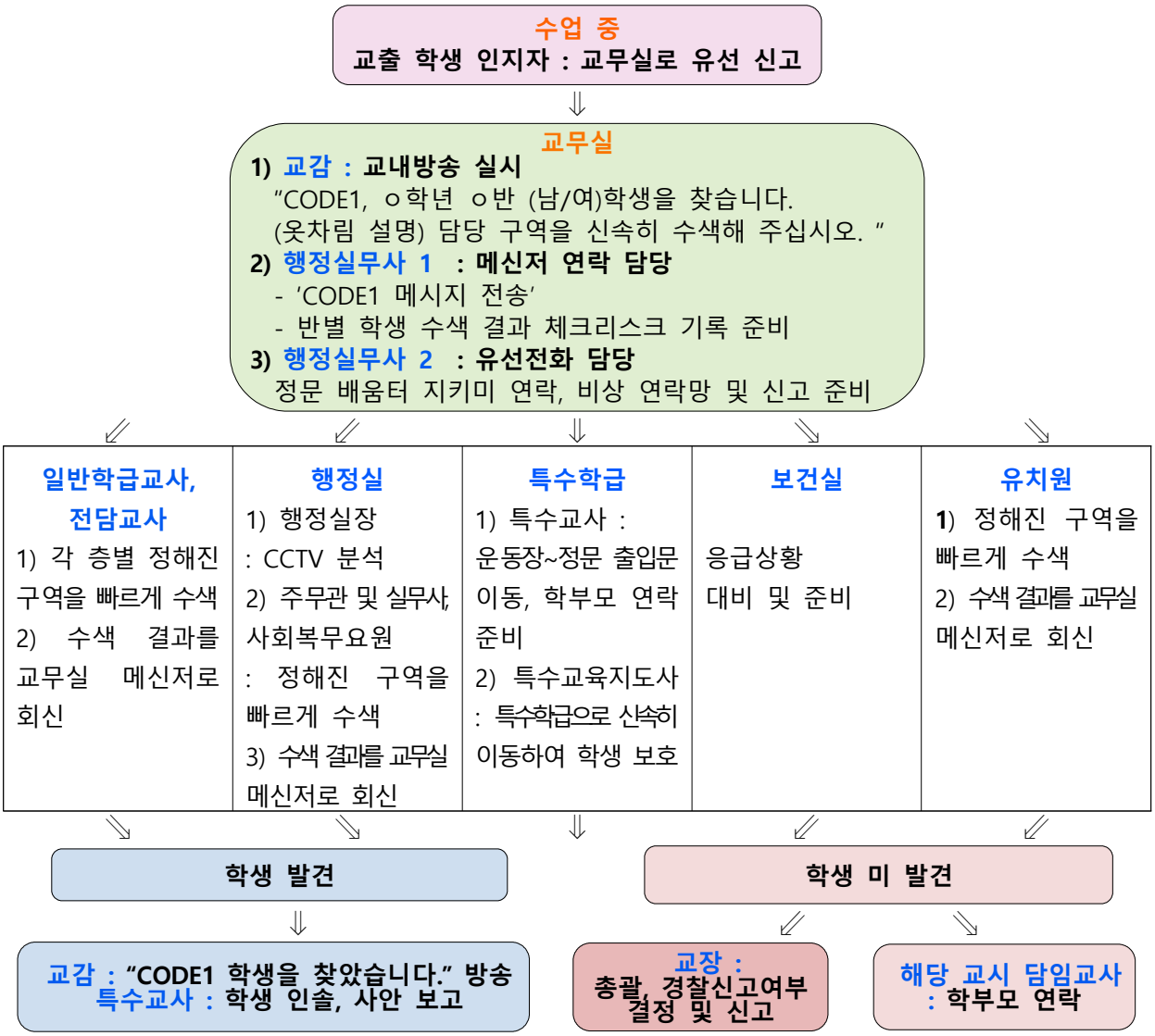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업 중 이탈 상황 발생 시 대응시스템]

가) 교내 물리적 특성 분석

교문	○ 정문 :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8:40~11:00까지 배움터 지키미가 교문 통제 및 관리함 ○ 후문 : 사람만 통행할 수 있고,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만 개방함
1층 건물 주출입구	○ 1층에 총 4개의 건물 출입구가 있고 낮 시간동안 열려 있음 ① 정문-운동장 출입구 2개 ② 후문 출입구 1개 ③ 텃밭 출입구 : 텃밭 외곽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음
1층 이동 계단 통행로	○ 총 4개 방향의 계단이 있으며(㉮,㉯,㉰,㉱) 이중 계단㉱는 유치원 별관과 연결되어 있음.
엘리베이터	○ 지하 주차장~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함 ○ 11:30~13:50 동안에는 급식차 이동이 함께 이뤄짐
옥상	○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학생출입 금지 표지가 되어 있고, 옥상 출입구는 24시간 잠겨 있음
지하	○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학생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고, 지하 시설실은 24시간 잠겨 있음
주차장	○ 출근 시간과 하교 시간이후에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이 개방되며 수업시간 중에는 잠겨 있음

나) 학생 이탈 경로 예상

다) 학생 교실 이탈 시 대응 시스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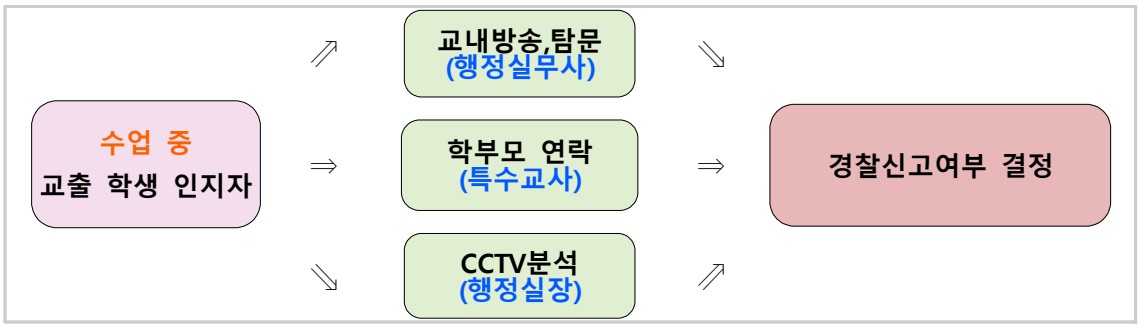


라) 각 직책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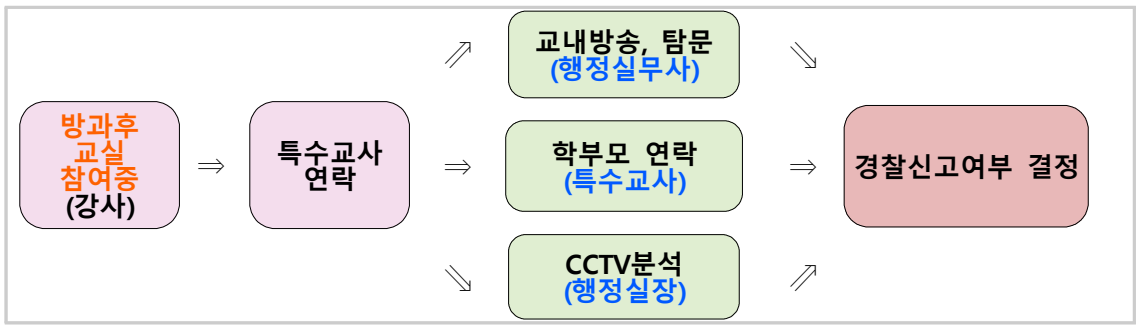
대상		대처내용
대책반장	학교장 (대책반장)	○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대책 부반장	교감 (대책부반장)	○ 현장 대응반 지원
현장 대응반	교무실 (교감, 행정실무사)	○ 실종학생 신고 접수시 'code1' 경보 발령 (교내방송) ○ 특수교사나 담임교사로부터 복장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지구대에 신고
	특수교사 또는 담임교사	○ 탐색 구역 확인 후 학생 발견 여부 교무실로 회신 ○ 학부모에게 연락
	일반교사 또는 교담 교사, 과학실무사, 행정실, 사회복무요원, 배움터 지킴이	○ 배분된 탐색 구역 확인 후 학생 발견 여부 교무실로 메시지 회신
지원반	교무실, 행정실장	○ 교내 cctv분석, 탐색 지원 ○ 관할 지구대 연락
	보건실	○ 의료적 응급상황 대비, 응급조치

마) 상황별 교출 학생 탐색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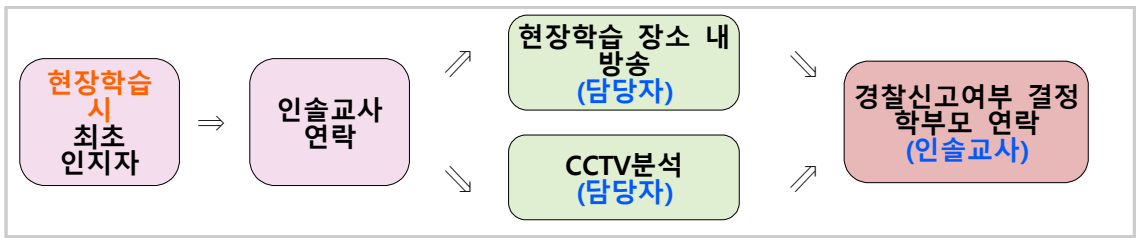
(1) 정규 수업 중



(2) 방과후 수업 중



(3) 현장학습



PART Ⅳ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1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학 생	사고 발생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학 교	사고 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학 생	치 료	• 병원치료
학 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 청 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 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지역 공제회 및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학부모	심사청구	•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3 학교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 상담 및 치료 지원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유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 실시

1)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에 따른 관심군 학생 관리 강화

◯ 대상 : 초 1, 4학년

◯ 4월 나이스 온라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Wee센터 및 전문기관 연계 조치

2) 학교 단위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 전문기관 연계 집중관리

- 학생 자살 또는 학교구성원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등 학교가 본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이차적인 후유증과 심각한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학생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리검사나 교직원과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 심리지원을 한다.
- 학교 내에 위기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휴게실 및 상담실)을 마련하고,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 심리적 위기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 추후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PC 및 스마트폰 청구 가능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청구가 간소화됩니다!



공제급여 청구절차

01 시스템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s://schoolsafe.or.kr)에 접속

02 화면에서 청구서 작성
PC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 바로 작성 (프린트 할 필요 없음)

03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도 (우편발송 없이) 바로 PC나 모바일로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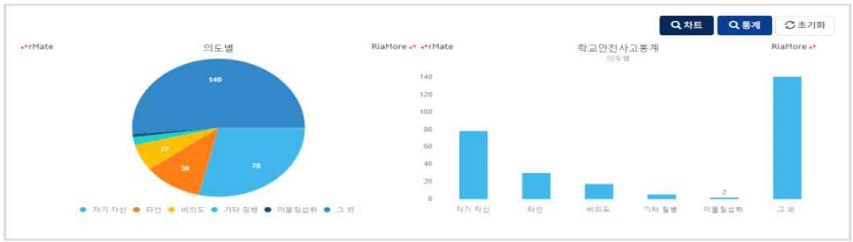
04 심사 및 지급
공제회에서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

PC 및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schoolsafe.or.kr/) 접속
- 공제급여 청구 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구서 작성시 각종 구비서류(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를 이미지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
- 다양한 환경(IE, Chrome, Safari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을 이용해 공제급여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사용자 통계 기능도 강화됐어요!

문자 및 숫자로만 표현되던 통계를 이젠 **시각화된 그래프 형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내용	유치원	1.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1. 내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1.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2.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2.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2.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2.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3.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3.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3.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3. 손씻기와 소득하기 등 청결유지 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4.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4.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4.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초등학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1.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알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2.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중학교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1.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2.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실험·실습실 및	3. 대중교통 이용	3. 자살예방 및	3. 인터넷 게임 사용	3. 각종 자연 재난과	3. 안전장비의	3. 상처의 종류와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체육·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안전수칙 알기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4.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 (아동학대 포함) 5.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 6. 성매매의 위험성 인식하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고등학교	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 2.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3.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 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학대 포함)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2. 작업장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교육 방법		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3.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1. 상황파악·전파

❑ 환자 상태 파악

○ 피해자의 전반적인 모습·행동과 주변환경, 추가위험(2차 피해) 여부 파악

(필요 시 피해 부위 사진 촬영)

○ 상태 파악 시 교내 응급처치 여부 및 응급환자* 여부 파악 필요

* 응급환자 여부 파악 방법 : 의식소실, 호흡곤란, 과다출혈 등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참조

○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 최초 발견자는 담당교사* 또는 보건교사 등 인근에 있는 교직원 등에게 상황전달

* 담당교사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를 의미

최초 발견자	세 부 내 용
학 생	• 인근에 있는 최초 발견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교직원	• 보건교사와 담당교사에게 상황전달 • 상황 전달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는 등 질서 및 생활지도 수행

❑ 생명 위급상황

○ 최초 발견자가 즉시 119 신고(신고 후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구 분	세 부 내 용
신고상황	• 의식소실 등 환자 상태가 위급 시 119 즉시 신고 •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119 신고(문의)
전달내용	• 사고 장소, 주요 건물, 사건/사고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응급처치 내용, 다른 질문이 없는 지 확인
주의사항	• 먼저 전화를 종료하지 않음 • 구조대가 출동 후 관련 정보를 다시 물을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전화를 사용하지 않음

2. 응급조치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상처, 코피, 탈구, 염좌 등 [붙임 #2] 참조

○ 병원 이동(필요 시)
- 교내 응급처치 결과 추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피해학생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락
- 학부모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 또는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 등으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지정
- 병원 이동 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담당 교직원을 선정하여 병원 동행
- 병원 이동 시 필요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전화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 병원 이동 중 2차 사고가 우려될 경우 119 구조대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교직원이 이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함

구 분	주 의 사 항
1	• 부상자의 몸을 움직일 때와 옮길 때는 가급적 환자의 움직임이 적게 한다.
2	• 이송 완료까지 부상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3	• 2인 이상이 이송을 할 경우, 반드시 리더를 정하여 이송한다.

❑ 생명 위급상황

○ 2차 피해 우려 확인
- 현장이 위험할 시 피해 학생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 척추손상 등 중증 부상자의 경우 무리한 이동 삼가

○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 119 구조대 도착 전 생명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장 먼저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이 응급처치 실시
- 응급처치 실시 전 의식, 호흡, 맥박 등 확인
- 의식이 없을 시 기본소생술 먼저 시행, 의식이 있을 시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호흡기질환, 출혈 등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 응급처치가 어려울 경우 피해 부위 촬영 사진을 119 구조대에게 공유하여 지시에 따름

○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교육시설의장, 학부모에게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병원 이동 시 동행할 담당 교직원 선정

※ 정보 전달방법 :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쳐서, 응급처치 결과 또는 진행 상황 등 전달

3. 상황정리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교내 응급처치

구 분	세 부 내 용
주의사항 안내	•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결과 및 주의사항 안내가 필요할 경우 피해 학생과 해당 담임교사에게 안내
응급처치 및 상황기록	• 사고 현황 등은 사고 발생 상황을 관찰했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교직원이 작성 • 사고현황 작성방법 :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피해 학생 상태, 처치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상황별 응급처치 결과는 보건일지에 보건교사가 작성 • 보건교사 부재 등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일지 작성 담당 교직원 선정

○ 병원 치료

- 아래 생명 위급상황 조치사항 시행(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 전달,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 학부모 병원 도착 후 치료경과 안내 후 피해 학생 인계
- 담당 의사가 피해 학생 스스로 귀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에게 주의사항 안내 후 귀가 조치(학부모 동의 시)

❑ 생명 위급상황

○ 병원 이송 및 치료경과 상황전달

- 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에 대해 교육시설의장 또는 교감, 학부모에게 상황 전달

○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 학부모 인계전까지 피해 학생 보호자 역할 대행
 (학부모 외 피해 학생 친척 등 역할 대행자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 인계 후 교직원 학교 복귀 가능)

4. 보고조치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교내 응급처치 : 보건일지 작성

○ 병원 치료

구 분	세 부 내 용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도공제회 신고 • 병원 치료결과에 따라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후 신청

❑ 생명 위급상황

○ 보고기준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상황보고

구 분	세 부 내 용
교육청 (교육부)	• 사망 또는 장해(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상과 3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육청 선 유선보고 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집계 시스템으로 사고 통지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계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출 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이상의 소아고열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이외의 심한 치통, 치아손상 등 신속을 요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재구성

붙임 #2 상황별 처치방법

❑ 일반생활 응급처치

○ 코의 상처 (코피, 비출혈)

둔탁한 물건 등에 의해 코에 충격을 받거나 고혈압, 고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처치

1)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혈액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코뼈 바로 아래 부분을 5~10분간 눌러준다.
3) 콧등을 얼음주머니 등으로 대어주거나 코 아래 윗입술 바로 위를 압박한다.
4) 출혈이 멈추었더라도 바로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코피 주의사항

피(비출혈)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코뼈가 부러진 것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입의 상처

입의 상처는 피와 흔들리는 치아로 인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치료할 때는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없으면 머리를 전방으로 숙이고 앉아 있게 한다.
2)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있으면 회복자세를 취해준다.
3) 입술 관통상 일 경우, 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근 드레싱을 대어주며, 입술과 혀에 차가운 것을 대어준다.

○ 치아 빠짐 (유실)

치아가 빠졌을 때, 신속한 지혈과 치아를 재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치아의 유실 시간을 파악한다.
2) 유실된 치아를 입안에 넣어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넣어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유가 없다면 깨끗한 물에 넣어 보존한다.
 -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보존하는 이유
 우유는 구하기 쉽고 멸균이 되어있고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4)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5) 유실된 치아의 뿌리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치아유실 후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
치아가 빠진 후 15분 내에 다시 심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빠진 치아가 공기 내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치아를 재이식해도 대부분 뿌리가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치아의 유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 귓속의 이물

귓속에 파리 또는 벌레가 들어간 경우 불빛으로 유도해 밖으로 빼낸다. 이물을 바늘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빼낼 경우 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9~130]

❑ 드레싱

○ 드레싱의 용도

감염방지, 출혈방지, 분비물 흡수

○ 드레싱의 종류

1) **거즈** - 작은 상처에 사용되며 크기별로 나뉘어서 멸균 포장되어 있다. 일부 거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상처에 달라붙지 않으므로 특히 화상부위나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 유용하다.
2) **접착 드레싱** - 혈액이나 액체가 응고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회용 밴드처럼 생긴 것은 무균 드레싱과 붕대를 혼합한 형태로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에 유용하다.
3) **외상용 드레싱** - 크기가 크고 두껍고 흡수성이 있는 소재로 소독이 되어 있으며 주로 출혈이 심한 베인 상처나 벗겨진 상처에 유용하다.

○ 드레싱 할 때 주의할 점

1) 솜뭉치나 뭉친 약솜을 드레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젖은 드레싱을 떼지 않는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드레싱을 덧댄다.
3) 상처에 달라붙은 드레싱을 억지로 떼어 내지 않는다. 만일 떼어 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적신 후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 붕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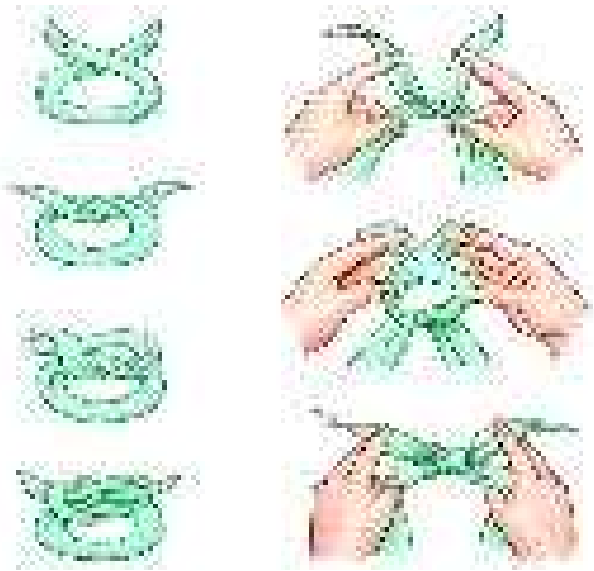
○ 붕대의 용도

1) 드레싱이 상처에 붙어 있게 고정
2) 부목의 고정
3) 압박을 통한 지혈
4)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
5) 부기(浮氣) 예방

○ 붕대의 종류

1) 탄력 롤 붕대 : 염좌 등 압박 및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2) 사두붕대 : 양 끝을 잘라 귀가 네 개 있는 모양. 돌출된 부위에 유용하다.
3) 삼각건 : 반창고가 없어도 드레싱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삼각건 매듭법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5~96]

○ 삼각건을 사용하여 상처 응급처치하기

머리

머리에 댄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히 머리에 넓게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한다.

1) 삼각건의 밑변 부위를 폭이 약 5cm 정도 되도록 접는다.
2) 접은 부분의 중심이 이마 중앙의 눈썹 위에 오게 한다.
3)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감고 교차하여 다시 앞으로 오게 하여 이마 중앙에서 묶는다.



어깨

어깨나 상완(위팔)에 댄 넓은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두개의 삼각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중의 한 개는 좁게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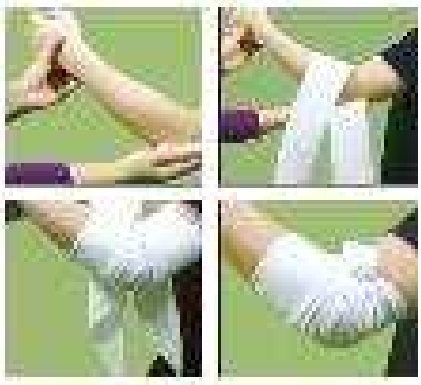
1) 펴 놓은 삼각건 꼭짓점 부근에 세 번 접은 다른 삼각건을 놓고 밑변이 평행하도록 하여 2~3번 접는다.
2) 넓은 삼각건으로 상처를 덮고 접은 삼각건의 양 끝을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겨드랑이 바로 앞에서 묶는다.
3) 부상당한 어깨 쪽 삼간건의 양끝을 겨드랑이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상완부에 돌려서 단단히 묶는다.



팔꿈치

팔꿈치의 상처에 댄 드레싱을 고정시키고 팔꿈치의 운동도 가능케 한다. 팔꿈치를 ㄱ자로 구부린 자세로 삼각건을 감는다.

1) 삼각건의 넓이를 7~10cm로 만든 후 드레싱 위를 중심으로 놓고 감기 시작한다.
2) 한번 돌려 감은 후, 한 쪽은 팔꿈치 위쪽으로 돌려 감아 주고 다른 한 쪽은 아래쪽으로 돌려 감아준다.
3) 삼각건의 양 쪽 끝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나게 한 후 묶어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2]

❑ 탈구

○ 정의

뼈가 정상위치를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 증상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붓는다.

○ 응급처치

1) 비상시가 아니면 비의료인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2) 부상부위를 편하게 하고, 냉찜질을 하여 통증과 부기(浮氣)를 가라앉힌다.
3)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병행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염좌

○ 정의

인대 등 관절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

○ 원인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정상운동 범위를 심하게 벗어날 경우 주로 발생한다.

○ 증상

1) 손상과 동시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며 통증을 유발한다. 부상부위를 움직일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
2) 부상부위의 피부색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지만, 변색될 경우 장기간 지속된다.

○ 응급처치

1) 부상부위가 손목일 경우 팔걸이를 하여 고정시키고, 발목일 경우 환자를 눕히고 부목, 삼각건 등을 활용하여 고정시킨 후 부상부위를 높여준다.
2)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다.

3) 염좌가 심하다면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다.
4) 발목 염좌가 있는데 혼자 걸어야 한다면,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바닥 굽 바로 앞에 접은 붕대의 중간 을 대고(신발은 벗은 상태라면 발등위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 발바닥을 한 번 감은 뒤) 양끝을 발뒤꿈치 위(뒤)에서 교차시킨 후 다시 발목 앞으로 돌려 교차시켜 양끝을 발뒤꿈치의 양쪽을 지나간 붕대 밑으로 넣어 걸어서 다시 발등에서 묶는다.
5) 발목 염좌는 되도록 걷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육염좌

○ 정의

근육이나 건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

○ 원인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

○ 증상

관절사이의 통증, 부종, 기형이 발생한다.

○ 응급처치

염좌의 처치내용과 같이 부상부위를 안정시키고, 냉찜질을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골격의 손상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 뼈의 골절이 의심되는 때의 응급처치

1)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된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2)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으로 골절을 악화시키게 해서는 안된다.
3) 굽은 곳을 바로 펴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돌출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
4) 골절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전부 부목을 댄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5)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 탈구(관절이 빠졌을 때) 시 응급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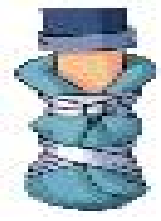
베게나 쿠션을 사용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염좌(근막 또는 인대 손상 등) 시 응급처치

1)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의 손상으로 흔히 '삐었다' 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2)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 주고 손상된 부분을 높게 해준다.
3) 찬 얼음으로 부은 것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면 효과적이다.
4) 골절과 같은 처치로 부목을 대준다.

○ 부목사용의 목적

1)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폐쇄골절이 개방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한다.
2) 신경, 근육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한다. 즉, 부러진 뼈끝이 주위 조직을 건드려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3) 동통을 경감한다.

발목 발등골절	염좌	하퇴골(정강이와종아리)골절
		

○ RICE(Rest-Icing-Compression-Elevation)

휴식(Rest)

1) 통증이 유발되는 움직임과 운동은 피하게 하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2) 머리, 목 손상 의심 시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다.

얼음찜질(Icing)

1) 손상부위에 거즈나 의복을 대어 피부손상을 예방한 후 얼음 등을 이용해 차갑게 해준다. 얼음찜질은 부기(浮氣)와 통증,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2) 얼음은 별도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수건이나 옷에 싼 후 이용한다. 단, 개방성 골절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3) 손상부위에 10분간 냉찜질을 한 후 손상부위를 확인했을 때 심하게 차갑다고 느낀다거나 빨갛게 된다면 냉찜질을 중단한다.

압박(고정)(Compression)

1)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얼음찜질을 하거나 높여 주기 전에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를 고정한다.
2) 압박(고정)의 목적
 - 통증 감소
 - 주변의 연한 신체조직 손상방지
 -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악화될 가능성 예방

올리기(손상 부위 높임)(Elevation)

1)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기(浮氣)를 줄여준다.
2)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는 부목을 대고 높여 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손상부위에 부목을 사용 시 고려할 점

1) 가능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상부위를 지지하면서 부착한다.
2) 개방골절은 출혈, 감염방지를 위해 골절부위를 지지하고 붕대를 감아준다.
3) 단단한 부목사용 시 부드러운 천 등을 감싸주면 좋다.
4) 부목사용 시 부목과 신체 사이의 빈 공간에 고임(삼각건, 천 등을 활용)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5) 부목은 삼각건, 붕대, 옷 등을 이용해 잘 고정한다.
6) 손가락, 발가락 끝을 자주 확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며, 부목을 댄 아래쪽이 저린다거나, 손·발가락의 피부색이 변할 경우 부목을 잠시 풀어준다. (30분마다 한 번씩 혈액순환 확인)
7) 가능하면 부목을 댄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충격처치를 병행한다.

❑ 화상

○ 화상의 정의

과도한 열, 화학물질, 전기, 태양열, 방사능 등에 의해 피부조직에 손상이 유발되는 것 →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감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신체로부터 나오는 체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

○ 화상의 원인(연령별)

1) 3세 이하의 소아 - 가정에서 끓는 물
2) 3~14세 -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염 또는 그을림
3) 15세 이상 - 작업상의 사고

○ 화상 응급처치

화상처치의 4가지 기본단계
1) 화상부위를 냉각시킨다.
2) 감염예방을 위해 화상부위에 드레싱을 해준다.
3) 쇼크 응급처치를 병행해 준다.
4) 의료적 도움의 필요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 학교에서의 화상 상황

1) 핫팩 : 저온 화상
2) 주전자(포트) : 컵이나 종이컵에 물을 붓다가 화상
3) 컵라면 :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거나 컵라면 용기를 들고 이동 중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음

○ 화상의 종류와 증상

1도 화상 **(표재성/홍반성 화상,** Superficial Burns)	• 피부의 외피층만 손상된 것으로 대부분 일광에 의해 발생한다 • 증상 :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 • 치료하면 대부분 특별한 흉터 없이 5~6일 안에 완치된다
2도 화상 **(부분층/수포성 화상,** Partial-Thickness Burns)	• 피부의 외피와 표피, 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이다 • 증상 : 물집, 심한 통증, 흉터나 피부변색(붉어짐), 탈모 등이 생긴다 • 치료해도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보통 3~4주 안에 완치된다

3도 화상 (전층/괴사성 화상, Full-Thickness Burns)	• 피부의 전층, 피하지방, 근육, 뼈, 혈관, 신경 등 하층 구조까지 손상된 화상 • 증상 : 상처부위가 갈색 또는 거무스름하고, 아래에 있는 조직은 새하얗게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다 • 치료해도 대부분 흉터가 남으며, 광범위한 3도 화상은 사망할 수도 있다

○ 화상 발생 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1) 된장, 간장, 기름, 약 등을 바르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2) 물집을 터트리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3) 눈 화상 경우 문지르지 말 것(각막 손상으로 실명 우려)
4)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피부손상, 세균 감염)
5) 피부가 부어오르기 전 시계, 반지 등 귀금속 제거할 것

출처: 응급처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11~112]

❑ 열성질환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일사병)
정의	• 고온에서 과도한 활동 후 체내 수분과 염분 소실로 일어나는 질환	• 땀을 과다하게 흘려 체내 수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질환	• 고온의 태양열 등에 의해 뇌의 체온중추기능이 마비되어 일어나는 질환
원인	• 고온의 환경에서 강도 높은 운동과 노동을 할 때	•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	• 근육 경련 (다리와 복부에 많음) • 따뜻하고 습한 피부 •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음 • 많은 양의 땀 분비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 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 체온은 정상 • 빠르고 약한 맥박 • 심한 발한	• 체온상승 •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 • 의식을 점차 잃음 • 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해짐 • 초기의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얕은 호흡
응급처치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진하지 않은 소금물, 스포츠 음료를 줌 •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 함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냄 •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섭취 •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높여줌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냄 •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음 • 환자의 머리, 어깨를 약간 높임

○ 열경련(Heat Cramps)

정의
고온상태에서 과도한 신체활동 후 체내 수분, 염분의 손실에 의해 근경련이 유발되는 상태
원인
심한 발한으로 인해 급격하게 신체 내 수분과 염분을 잃을 경우 발생된다.
증상
다리와 복부에 통증을 동반한 근수축, 체온은 정상, 축축한 피부
응급처치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마사지한다.

○ 열탈진(Heat Exhaustion), 열성피로(Heat Fatigue)

정의
고온상태에서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도한 손실로 혈류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임상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극심한 고온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심한 노동으로 수분 손실이 진행되어 혈류량이 감소하지만 피부나 말초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며 생존에 필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
증상
낮거나 정상적인 체온,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두통, 탈진, 메스꺼움, 현기증과 허약/무력감, 빠르고 약한 맥박 등
응급처치
1)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2)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3) 젖은 수건으로 열을 증발시킨다
4) 의식이 있으면 적은 양의 시원한 음료를 준다

○ 열사병(Heat Stroke)

정의
고온에 의해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요장기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고온에 의한 체온조절 중추기능의 마비
증상
높은 체온, 붉고 건조한 피부, 의식 소실, 약하고 빠른 맥박, 얕고 빠른 호흡 등
응급처치
119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외의 처치법은 열탈진의 처치와 동일하다.

❑ 동상 및 저체온증

○ 동상의 정의

신체의 일부가 언 상태를 말한다.

○ 동상의 원인

추위에 신체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기온, 노출시간, 바람 등이 주요 유발 요인이다.

○ 동상의 종류

1) 표재성 동상 : 피부는 손상 되었으나 피부 아래 깊은 조직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2) 심부 동상 : 피부와 피부 아래 깊은 조직까지 침범한 동상이며 심하면 신체부위를 잃을 수 있다.

○ 동상의 증상

동상 부위의 감각 소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피부, 변색된 피부색

○ 동상 응급처치법

1)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지르지 않는다.
2) 동상 부위를 37~40도 정도의 물에 피부색이 정상이 될 때까지 담근다. 온도계가 없는 경우 손을 넣어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이면 된다.
3) 동상 부위는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고, 손·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멸균된 솜이나 거즈를 넣고 감는다.
4)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벌에 쏘였을 때

○ 정의

벌의 몸통 부분에 있는 침에 의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보고되는 중독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원인

벌통을 건드린 경우, 요란한 색의 옷을 착용한 경우 등이 있다.

○ 증상

보통은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정도지만 벌독에 의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 두드러기,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벌독 알르레기를 유발하는 벌

꿀벌, 말벌, 땅벌 등

○ 벌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핀셋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하며, 벌침 제거 후 냉찜질을 한다.
(벌침을 제거할 때에는 독낭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발생 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자세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1)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의 옷을 피한다.
2)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3) 옥외에선 언제나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지만 원색의 옷은 피한다.

- 독충에 물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독충에 의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전신적인 과민반응 -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 의식저하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하다.
- 과민성 쇼크의 경우 - 급속히 진행되며 1~2시간 이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60~80%는 기도가 부어 질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응급처치 - 쇼크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예방 - 평소에 알레르기나 특정물질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주변에 알린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7~128]

붙임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1. 현장 안전과 반응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3. 호흡 확인

호흡은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4. 가슴압박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심장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지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가슴 압박법]



[소아 가슴 압박법]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5. 기도유지 및 인공호흡

1) 기도유지 방법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을 준비한다.

2) 인공호흡 방법

인공호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②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③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자동제세동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기도폐쇄(하임리히법)

순서	처치 방법
1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묻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기도 폐쇄이므로 즉각 처치 시행
2	환자가 기침을 크게 한다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스스로 기침을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라면 **즉시 등 두드리기 시행**
3	등 두드리기 5회 연속 시행 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 법) 시행
4	기도폐쇄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5회씩 반복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골절

○ 골절의 형태별 분류

1) 분쇄골절 - 골격이 손상되어 두 개 이상의 골절 파편으로 나누어진 경우
(자동차 사고 등에 많음)
2) 나선골절 - 골절이 뼈 둘레를 돌면서 골절된 형태(스키사고 등에 많음)
3) 사선골절 - 뼈의 축에서 사선으로 골절된 형태
(뼈에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 경우)

○ 골절의 원인별 분류

1) 외상성 골절 - 일반적인 골절, 정상적인 뼈가 외력으로 인해 발생
2) 특발성 골절 -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특정부위의 뼈가 약해져 외력 없이도 근수축에 의해 이상골절이 발생된 상태. 병적 골절이라고도 함
3) 피로성 골절 - 일정 외력이 장기간 반복되어 뼈에 누적되면 피로현상으로 변질되는 현상

○ 신체 부위별 골절처치

1) 빗장뼈(쇄골) 골절

증상

- 일반적인 골절 증상이 나타난다.
- 대부분 부러진 부분이 만져진다.
- 팔을 어깨위로 들지 못한다.
- 부상당한 어깨가 반대편보다 쳐진다.

응급처치

- 부상당한 쪽의 손을 팔꿈치 보다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되고 삼각건을 댄다.

2) 위팔뼈(상완골) 골절

증상

-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어깨관절의 운동을 할 수 없다.

응급처치

- 팔꿈치를 ‘ㄴ자’로 구부린 후 어깨부터 팔꿈치 길이의 부목을 댄다.
- 삼각건을 부러진 뼈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묶는다.
- 삼각건으로 팔걸이를 만든다.
- 삼각건으로 팔 전체를 고정한다.
- 부목이 없을 시 붕대로 팔 전체를 가슴에 대고 감는다.

3) 팔꿈치뼈(주관절) 골절

증상

- 관절부위가 붓고 팔을 구부릴 수 없다.

응급처치

- 겨드랑이부터 손가락까지 부목을 댄다.
-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으면 팔을 무리하지 않게 끌어올리고 팔을 몸체에 대고 삼각건을 고정시킨다. 팔과 몸을 고정할 때는 골절부위를 건드리거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구부러진 팔을 무리하게 펴지 않는다.
- 이송 시 삼각건으로 허리를 묶어 고정한다.

4) 아래팔뼈(전완골) 골절

증상

- 아래팔 뼈 두 개가 모두 부러질 경우 골절의 일반적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팔 뼈 전완의 뼈 한 개 또는 두 개가 부러질 수 있다)
- 한 개만 부러졌거나 손목 뼈마디가 부러졌을 때는 부상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다.

응급처치

-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의 부목을 손바닥 쪽에 댄다.
- 두 개의 삼각건을 골절부위 위쪽부터 맨다.
- 손바닥이 가슴 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 보다 약 10cm정도 높게 한 후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쇄골(빗장뼈) 골절	주관절(팔꿈치골절)	전박골(아래팔뼈골절)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6~108]

❑ 전기화상

○ 특징

1) 화상의 크기가 작아도 신체 내부의 심한 손상이 동반되며, 특히 심장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2) 전기가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가 신체내부로 유입되고 다른 부위로 나오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나온 곳에 화상을 입고 전기가 나오는 곳의 상처가 깊고 크다.

○ 전기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 방법

1)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의 모든 전원을 차단 후, 접근해야 한다.
2) 필요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쇼크, 화상, 골절 처치 등을 실시한다.
3) 처치 - 119를 통해 화상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전문치료를 받도록 한다.

❑ 저체온증

○ 저체온증의 정의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 저체온증의 원인

찬물 속에 오래 있거나 젖은 의복을 장시간 입고 있을 때,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장시간 체류 등 장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 저체온증의 증상

1)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다.
2) 체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며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3) 온몸을 떤다.(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진다.)
4) 몸이 저리다.
5)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6) 무감각해지고 의식상태가 희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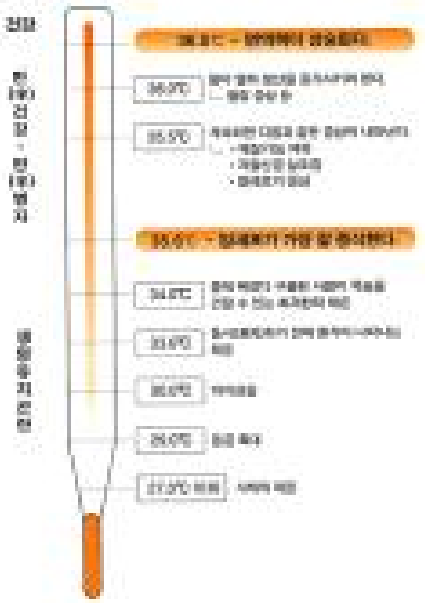
○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법

1) 신속히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치명적인 상태(호흡정지, 심장마비) 유무를 확인한다.
2) 필요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3) 젖은 의복은 벗기고 환자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따뜻한 장소로 옮겨 몸을 따뜻하게 한다. 단, 갑자기 체온을 높이지 않는다.
5) 저체온증 환자가 의식이 잃을 경우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 저체온증의 단계



○ 저체온증의 온도별 변화



저체온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갑작스럽게 체온을 변화시켜 환자의 떨림 증상을 억지로 중지시키려 하지 않는다
- 32℃ 이하의 저체온 환자에게 뜨거운 물병이나 핫팩 등으로 급속 가온치료를 하지 않는다. 급속가온은 말초의 차가운 혈액을 순환시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0~12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일반사항	학교명						
	사건번호				보고일자		
	사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반	사고자구분
	지도교사		작성자	성명		연락처	
사고관련자	성명						
	학년반						
	사고관련자 구분						
사고내용	사고일자			사고부위			
	사고시간			사고당시활동			
	사고장소			사고의도성			
	사고형태						
	사고매개물						
사고개요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신명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3 202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 상해 발생으로 치료 중 간병 필요 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공제 대상 확대)**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 선택권 확대**와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대학이 추가**되도록 규정한다.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만 안전공제 가입 가능

○ **(치료 중 간병료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치료 완료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공제급여 지급제한 상향 입법)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 **[대법원 판결내용]** 학교안전법시행령 제19조의2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규정(기왕증, 과실상계)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

❑ **동 개정으로 인해**

○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학생·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 (생 략)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요양급여)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요양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신 설>	2.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신 설>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신 설>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 ---------- ---------.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생 략)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

현 행	개 정 안
	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재난안전관리 주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명	위치	관할구역	전화번호
상동119안전센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13 (상동)	상동·상1·2동 송내1동	032-650-4564
신상119안전센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36 (상동)	상3동·중4동	032-650-4594

경기도 관할 경찰서 현황

경 찰 서	주소	대표 전화번호
부천소사서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 부천남부경찰서	경찰민원 콜센터 182
부천원미서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31	

의료기관 현황

□ 권역응급의료센터 현황

지역	기관명	대표전화	기관주소(도로명)
부천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032-621-5114	부천시 조마루로 170 (중동)

□ 지역응급의료센터 현황

지역	기관명	대표전화	기관주소(도로명)
부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1577-0675	부천시 소사로 327 (소사동)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1599-6677	부천시 호현로489번길 28 (소사본동, 세종병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

지역	기관명	대표전화	기관주소(도로명)
부천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	032-670-0001	부천시 중동로 361 (약대동)